

| SRI-기본-2019-02 |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for Capacity Strengthening and Vitaliz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in Suwon City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근혁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2019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11-4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9.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함 등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삶의 경험과 의사를 정책입안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연구이다. 여성정책의 수립과정 및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수원시는 여성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관계 구성 이후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원시는 여성단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성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며, 정책수요는 무엇인가, 수원시 여성단체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과 필요성을 가지고 수원시 여성단체의 현황과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심층면접조사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차세대 활동가 육성은 젊은 20~30대를 리더로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단체 회원의 주요 세대층을 이해하고 기존 회원들과 신규 회원들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현재 여성단체가 지니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재정 여건의 악화와 신규 회원 충원 어려움 등은 단체 활성화 보다 단체 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방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단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활동가 육성을 통한 세대 간 소통 강화와 젊은 세대의 신규 회원 충원이 필요한 것이다. 차세대 활동가 육성을 위해 수원시의 지원을 받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한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차세대 활동가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후 중앙·지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단체별 자체적인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어려울 경우,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세대 활동가 육성 과정

및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논의 및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를 종합해보면 수원시 여성단체는 자체적인 역량, 활동가의 전문성 등에서 주관적인 기준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 이상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별 대안은 단체의 규모 및 여건 등의 차이로 조성 환경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가 현재 지니고 있는 역량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역량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혹은 갖추기 어려운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기준의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수원시의 여성단체를 위한 예산은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조성되므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매년 일정 부분 필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형식을 통한 수원시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수원시의 공공분야 정책과정에서 여성단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는 위원회에 임명되는 것으로 수원시정 분야별 의사를 표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살펴보면 30일의 모집기간을 두고 시민공모 위원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위원을 모집하며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반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있다.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은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자발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여성단체 여성 및 시민들로 위원이 구성된다면 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보다 각자의 역량강화 및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시 주도적 위원회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수원시와 여성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심층면접조사에서 수원시가 여성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닌 간섭의 존재 혹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수원시 여성단체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여성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수원시가 여성단체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결국, 수원시 여성단체는 수원시와 관계에 있어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와 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시적인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참여 촉진,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협의 단계에서 참여 촉진, 정책개선안 수립 및 실질적 수행 등 다방면에서 공동 참여, 협의, 숙의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수원시가 앞장서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공평한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원시 여성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가 증진되어야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는 재정운영에 있어 회원의 예산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회비를 통한 단체 운영보다는 수원시 및 정부의 지원 사업 등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회비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원시 여성단체가 소규모일수록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단체별 자체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원시의 지원을 통해 홍보효과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면, 수원시 여성단체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수원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수원시 여성단체에 대한 홍보와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수원시민 누구나 여성단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 고충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인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여성단체를 이해하고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수원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여성단체별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원시 여성단체가 현재 공통적으로 변화에 동참하는 것은 소규모 모임의 활성화로 과거 단체의 목표와 이념을 따르는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단체와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성인지 교육, 여성 및 여성단체의 인식제고, 성평등 관련 정책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모임은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이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및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이고 유익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상호간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체활동의 이해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변화에 따른 여성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수원시가 여성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여성단체 소규모 모임 장소 제공한다면 여성단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간 지원에 따라 여성단체는 시민들과 다양하게 교육 및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단체, 협력적 거버넌스, 역량강화, 활성화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이론적 논의	 7
제1절 여성단체에 대한 이해	9
1. 여성단체의 개념 및 범위	9
2.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유형	13
제2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17
1.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17
2. Salamon의 네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실패현상	21
제3절 역량강화에 대한 이해	25
1. 역량강화의 개념	25
2. 역량강화의 실천효과	2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 모델	27
1. 선행연구 검토	27
2. 연구분석 모델	32
 제3장 여성단체 현황	 35
제1절 여성단체 현황	37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성단체 현황	37
2. 수원시 여성단체 현황	41
제2절 여성단체 관련 법률 및 정책	46
1. 여성단체 관련 법률	46

2. 여성단체 관련 정책 및 예산	50
제4장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에 대한 분석	6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63
1. 조사 개요	63
2. 분석 방법	65
제2절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분석 결과	67
1.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67
2. 재정 현황 및 역량	80
3.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87
4.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99
5.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110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120
1. 조사 개요	120
2. 조사 내용	120
3. 분석 결과	121
제5장 정책 제언	129
제1절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	131
1.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	131
2.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준 확대	132
3. 다양한 형식을 통한 수원시 내 위원회 구성	133
제2절 수원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135
1. 수원시와 여성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	135
2. 수원시 여성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 증진	135
3. 수원시 여성단체별 소규모 모임 활성화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43
Abstract	159

표 차 례

〈표 2-1〉 여성단체의 개념 및 정의요소	10
〈표 2-2〉 법률에서 여성단체의 정의 및 범위	11
〈표 2-3〉 비영리민간단체 기준별 분류	14
〈표 2-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유형 및 분야(2019년 기준)	16
〈표 2-5〉 Peters의 거버넌스 유형 분류	19
〈표 2-6〉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비교	21
〈표 2-7〉 Salamon의 네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실패현상	23
〈표 2-8〉 역량강화의 실천효과	26
〈표 2-9〉 여성단체 관련 선행연구 정리	31
〈표 3-1〉 연도별·등록구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및 증감률	37
〈표 3-2〉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수	38
〈표 3-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및 비율	39
〈표 3-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수	40
〈표 3-5〉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명 및 주요사업 현황	41
〈표 3-6〉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 소속 단체명 및 주요사업 현황	44
〈표 3-7〉 수원시 여성단체별 대표의 임기	44
〈표 3-8〉 수원시 여성단체 유형별 분류	45
〈표 3-9〉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유형별 공모사업	51
〈표 3-10〉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선정과제	52
〈표 3-11〉 여성가족부 연도별 민간단체 관련 예산	53
〈표 3-12〉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현황(2012년~2018년)	54
〈표 3-13〉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예산(본예산)	55
〈표 3-14〉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정책(2015년~2019년)	56
〈표 3-15〉 수원시 연도별 양성평등기금(2015년~2019년)	56
〈표 3-1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신청사업 및 예산(2015년~2019년)	57
〈표 3-1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유형별 분류(2016년~2019년)	57
〈표 3-18〉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수원시 여성단체 사업비 현황	58

〈표 4-1〉 조사설계 개요	64
〈표 4-2〉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내용	65
〈표 4-3〉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분석기법 및 응답자 특성	66
〈표 4-4〉 귀 단체가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67
〈표 4-5〉 귀 단체의 주요 활동범위는 어느 단위에 해당됩니까?	68
〈표 4-6〉 귀 단체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68
〈표 4-7〉 귀 단체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69
〈표 4-8〉 귀 단체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십니까?	69
〈표 4-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복수응답) ·	70
〈표 4-10〉 귀하가 속한 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
〈표 4-11〉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72
〈표 4-12〉 귀하가 속한 단체는 활동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3
〈표 4-13〉 귀 단체의 주요한 활동대상은 누구입니까?(복수응답)	74
〈표 4-14〉 귀하가 속한 단체는 주요 활동대상에 따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5
〈표 4-15〉 귀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77
〈표 4-16〉 다음은 귀하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	79
〈표 4-17〉 귀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2018년 기준, 프로젝트 사업비 포함) ·	80
〈표 4-18〉 귀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81
〈표 4-19〉 귀 단체의 예산 지출 비중은 어떠합니까?	81
〈표 4-20〉 귀 단체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82
〈표 4-21〉 귀 단체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3
〈표 4-22〉 다음은 귀 단체의 재정적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84
〈표 4-23〉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재정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5
〈표 4-24〉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재정 안정화(재정난 해결)를 위해서는 다음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6
〈표 4-25〉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는 몇 명이며 연령별 분포를 기재해주세요.	87
〈표 4-26〉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 관련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88

〈표 4-27〉 귀 단체의 회원 관련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89
〈표 4-28〉 귀 단체의 경우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90
〈표 4-29〉 제공하고 있다면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92
〈표 4-30〉 귀 단체의 경우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93
〈표 4-31〉 귀 단체는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94
〈표 4-32〉 다음은 귀 단체의 인적자원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96
〈표 4-33〉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7
〈표 4-34〉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8
〈표 4-35〉 귀 단체는 아래 제시된 정책과정의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	99
〈표 4-36〉 귀 단체는 지난 1년간 아래에 해당되는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100
〈표 4-37〉 귀 단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01
〈표 4-38〉 귀 단체는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102	
〈표 4-39〉 귀 단체가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유형별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3
〈표 4-40〉 귀 단체는 다음 정책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4
〈표 4-41〉 다음은 귀 단체의 정책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106
〈표 4-42〉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책참여 및 역량 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7
〈표 4-43〉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지속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9
〈표 4-44〉 귀 단체는 다음 분야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0
〈표 4-45〉 현재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형성(연대활동) 및 유지 정도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
〈표 4-46〉 현재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유형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
〈표 4-47〉 귀 단체는 다음 분야와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5
〈표 4-48〉 다음은 귀 단체의 거버넌스(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117
〈표 4-49〉 귀 단체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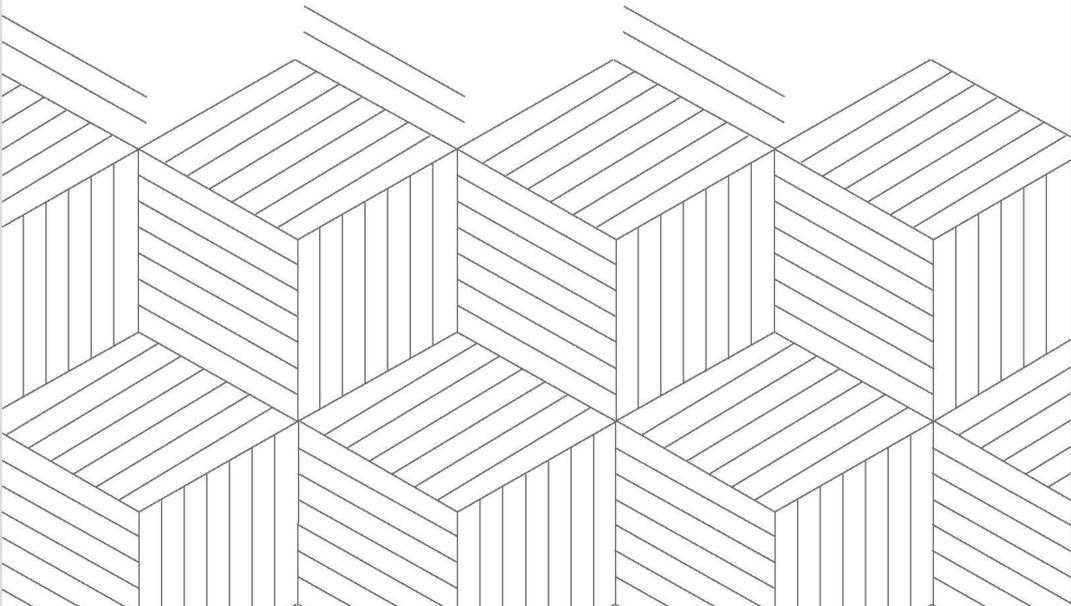
〈표 4-50〉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거버넌스(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9
〈표 4-51〉 심층면접조사(FGI) 집단구분 및 조사내용	12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1〉 수원시 여성단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활성화 모델 ·	33
〈그림 5-1〉 제5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포스터	13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남녀 간 지위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매 해를 거듭할수록 성주류화가 실천되고 있으나 여성들이 체감하는 사회체계의 변화는 아직까지 평등·공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함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삶의 경험과 의사를 정책입안에 반영해줄 수 있는 여성단체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안태운 외, 2012).

여성정책의 수립과정 및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복지와 성평등 정책 등이 확대되고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이 상당부분 민간 위탁되면서 여성단체는 여성정책 전반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단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여성단체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수가 적고 ‘여성의 인권향상’, ‘여성의 지위향상’, ‘성평등’, ‘사회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단체보다 ‘지역사회 봉사’, ‘지역사회발전’, ‘건전가정육성’,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단체가 많이 등록(허성우, 1998; 정현백 외 1998)되어 있어 여성정책 전반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 여성단체 지원에 대한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대로 된 공간과 인력, 회원모집 방식, 운영체계, 재정 건전성 등 열악한 환경과 인프라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단체가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애, 2003; 홍미희 외, 2007, 태희원 외, 2016).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여성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관계구성 이후에 각 이해관계자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여성단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성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며, 원하는 정

책수요는 무엇인가, 수원시 여성단체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등의 필요성과 의문을 가지고 수원시 여성단체의 현황과 역량강화 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여성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수원시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에 대해서 재탐색하고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수원시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의 문제점 파악과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목적으로 첫 번째, 여성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을 정의하고, 여성단체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학술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여성단체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와 제약 그리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모델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립된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진단 설문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 수원시 여성단체의 현황과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재정 현황 및 역량’,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영역별로 조사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내용 및 보다 세부적인 수원시 여성단체 현황과 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양적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여성단체는 수원시의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원시 여성정책 거버넌스에서 수원시청을 주요 주체로 이루어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띠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체계 안에서 수원시 여성단체가 동등한 역할과 의견개진 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내에 소재를 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단체의 범위는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23개 여성단체들로 제한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 단년으로 설정하며, 여성단체 현황 및 역량강화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와 FGI를 수행한다. 내용적 범위는 여성단체의 이해, 여성단체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 수원시 여성단체 현황,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설문조사(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재정 현황 및 역량,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있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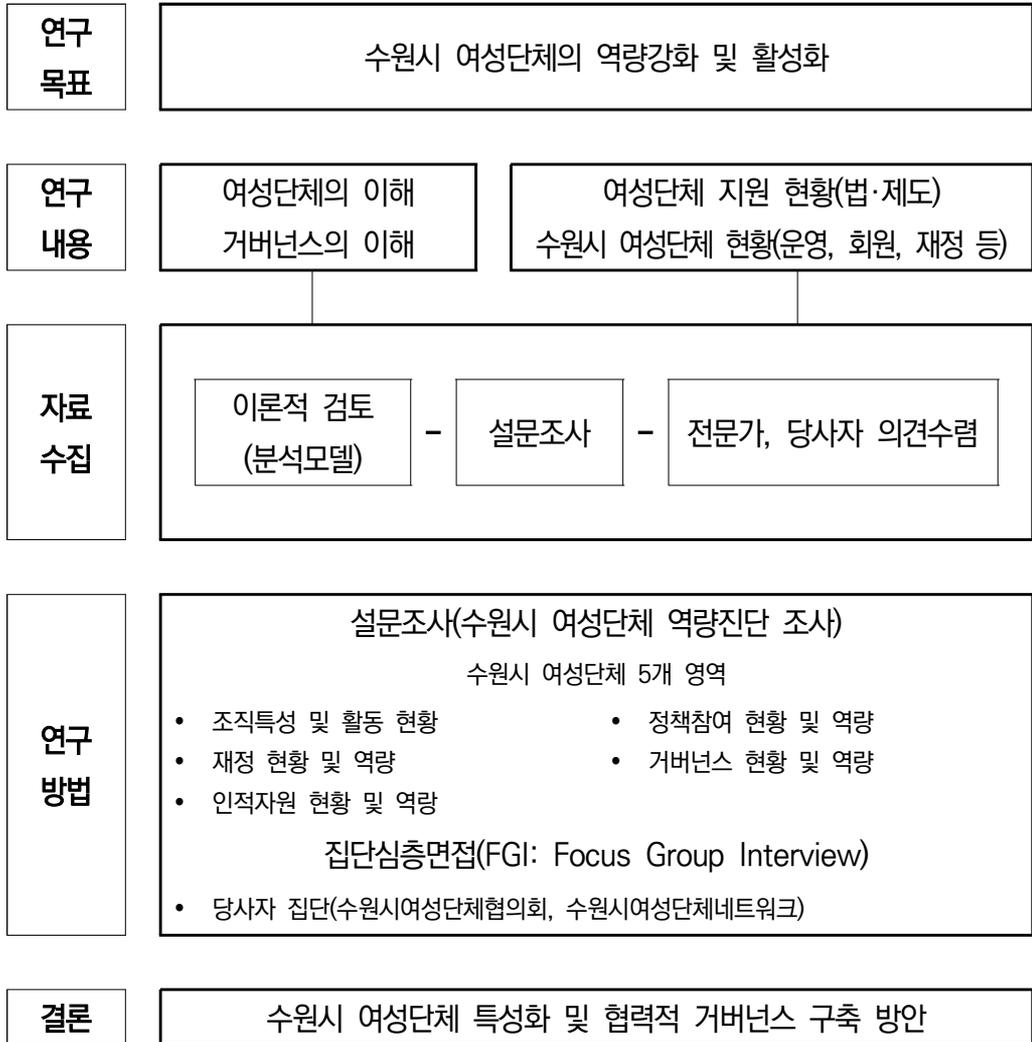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지원방안의 타당성(validity)과 적실성(relevance) 제고를 위해서, 본 연구는 최적의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그림 1-1> 참조).

첫째, 주제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선행연구 분석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연구 주제 및 방향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고문헌은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법령자료, 일반서적, 인터넷 자료, 개별 기관 및 프로그램 관련 현황 자료 등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세부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여성단체, 거버넌스 등의 개념 정의, 수원시 여성단체 현황, 여성단체 지원 법률, 조례, 정책 등을 조사한다. 또한 여성단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수원시 등 통계자료를 조합하여 분석한다.

둘째,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영역으로는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진단을 위한 5가지 영역으로 조직특성, 재정, 인적자원, 사업, 정책참여, 거버넌스 등을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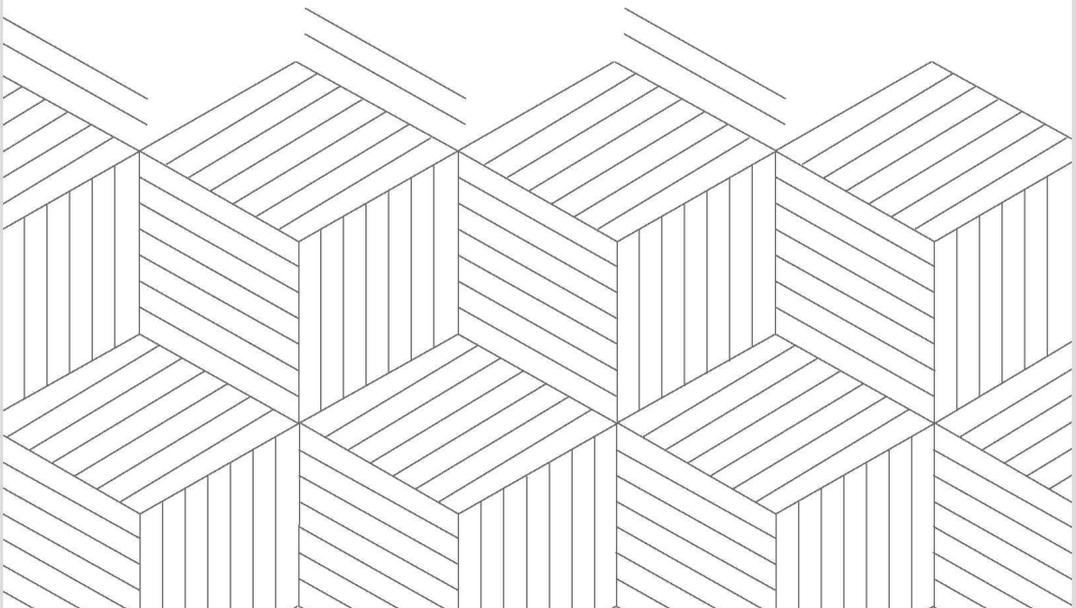
셋째, 대상자 인터뷰를 실시한다. 대상자 인터뷰는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 네트워크에 소속된 여성단체의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원시 여성단체의 현황 및 직·간접적 문제점과 요구도 등을 취합함으로써 대상자별 지닌 특성을 극대화하고 양적 조사에서 얻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직접 듣기 위함이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여성단체에 대한 이해
- 제2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 제3절 역량강화에 대한 이해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 모델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여성단체에 대한 이해

1. 여성단체의 개념 및 범위

1) 여성단체의 개념

‘여성단체’의 조작적 정의가 선택되지 않고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에는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연구대상에 요구되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연구범위에 맞게 여성단체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정의된 개념들은 ‘주체’ 혹은 ‘이념’에 따른 정의 그리고 ‘주체’와 ‘이념’이 혼합된 정의 등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다(〈표 2-1〉 참조). 가장 간략하게 설명되는 여성단체의 정의는 한국여성개발원(1994)과 보건복지부(1996)가 ‘여성에 의한 조직’으로, 여성단체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단순히 ‘주체’만 지정하여 정의하였다(김혜경, 1999).

반면에 ‘이념’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여성단체에 대해 조형(1984)은 ‘여성단체가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주의적 이념을 지닌 조직체’라고 정의하였고,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타법 개정 전 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였다. 단체의 구성원이나 주체의 성별,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 보다는 목적에 있어서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여성단체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안태운 외, 2012).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별도로 여성단체의 정의 없이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주체’와 ‘이념’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되는 여성단체는 김정한 외(1985)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공통의 관심사의 추구를 위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모인 자발

적인 집단', 서명선(1985)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공통된 관심사의 추구를 위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모인 자발적인 집단', 정현백 외(1998)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려는 여성들로 구성된 자발적 집단', 한정자 외(2004)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정부·비정치적·비종교적·비영리를 추구하는 여성으로 조직된 단체로 중앙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홍미희 외(2007) '여성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안태윤 외(2012)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려는 여성들로 구성된 자발적 집단', 여성가족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민법」 제32조1)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2-1〉 여성단체의 개념 및 정의요소

구분	정의	정의요소
한국여성개발원(1994) 보건복지부(1999)	여성에 의한 조직	주체
조형(1984)	남녀평등사회구현이라는 여성주의적 이념을 지닌 조직체	이념
여성발전기본법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념
김정한 외(1985)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공통의 관심사의 추구를 위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모인 자발적인 집단	주체, 이념
서명선(1985)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공통된 관심사의 추구를 위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모인 자발적인 집단	주체, 이념
정현백 외(1998)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려는 여성들로 구성된 자발적 집단	주체, 이념
한정자 외(2004)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정부·비정치적·비종교적·비영리를 추구하는 여성으로 조직된 단체로 중앙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주체, 이념
홍미희 외(2007)	여성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주체, 이념
안태윤 외(2012)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려는 여성들로 구성된 자발적 집단	주체, 이념
여성가족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주체, 이념

자료: 김혜경(1999); 안태윤 외(2012)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2)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총 6개호 존재,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여성단체의 범위

현행 법률에서 여성단체의 범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명시된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중 양성평등 촉진, 여성인권 및 복지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등록 단체로 볼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광역시도에서 제정한 양성평등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여성단체의 정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7개 광역시도는 여성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을 조항으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김복태 외, 2018).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더불어 여성단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단체에 대한 정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표 2-2〉 참조).

〈표 2-2〉 법률에서 여성단체의 정의 및 범위

법률	정의 및 범위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문화 촉진사업, 교육·연수, 정보교류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을 위해 해당 여성들에게 교육기회의 제공,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본조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법률	정의 및 범위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
강원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u>여성단체</u>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충청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라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라북도 성평등기본조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경상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여성단체는 ‘여성풀뿌리단체’로 임의단체, 비등록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를 가지며 여성 관련 활동을 하고, 여성회원 비율이 높은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여성단체로 판단된다.

정리된 여성단체의 정의와 범위에 따르면 여성단체는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주체라 할 수 있다(김복태 외, 2018). 하지만 여성단체에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의 단체 분류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신에 의제·사업 중심으로 단체를 분류하려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여성단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성단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를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여성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와 그 외의 단체(임의단체, 비등록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까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및 유형

1)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여성단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은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비영리민간단체(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비영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지역시민단체(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윤형섭 외, 2006).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구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점은 공익성과 사익성 그리고 정부와 비정부라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구제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효시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 영역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Public Sector),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Private Sector)에 이어 제3섹터(Third Sector)로 지칭하고 있는 봉사영역(Voluntary Sector)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이상락, 2012).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세부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구성된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셋째,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넷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은 활동수준, 조직구조, 법적요건, 활동영역, 단체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표 2-3〉 참조). 첫 번째, 활동수준에 따라 국제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 전국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적 단체는 환경, 평화, 난민구제, 저개발국 빈민지원 등 지구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그린피스’, ‘국제엠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국적 단체는 때때로 국제적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기는 하나 활동의 대부분이 한 국가의 역내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를 말하며, 지방적 단체는 지방자치, 지역 환경, 지역복지, 지역문화 등의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두 번째, 조직구조에 따라서 단독형 비영리민간단체, 연합형 비영리민간단체, 협의형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독형 비영리민간단체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단체이다. 연합형 비영리단체는 단체 안에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체로서 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는 단체, 협의형 비영리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법적요건에 따라서 법인체형 비영리민간단체와 임의형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인체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법인격이 아닌 나머지 임의단체는 모두 임의형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한다.

네 번째, 활동영역에 따라서 환경, 인권, 여성복지·소비자권리·교육연구·청소년·의료보존·주택·개발·노동·국제원조·빈곤구제·교통·평화·문화예술체육·권력감시 및 부정부패방지·모금, 경제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단체기능에 따라서 견제기능 수행 비영리민간단체, 복지기능 수행 비영리민간단체, 대변기능 수행 비영리민간단체, 조정기능 수행 비영리민간단체, 교육기능 수행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이상락, 2012).

〈표 2-3〉 비영리민간단체 기준별 분류

구분	내용
활동수준	
국제적	환경, 평화, 인권, 난민구제, 빈민지원 등과 같이 전지구적 문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국민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 ※ 예: 그린피스, 국제엠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등
전국적	한 국가의 전국적인 수준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 ※ 예: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지방적	한 국가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단위 수준에서 결성된 단체
조직구조	
단독형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대부분의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연합형	하나의 단체 안에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체, 대부분의 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
협의형	단독 비영리민간단체 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여러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 예: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구분	내용	
법적요건		
법인체형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임의형	법인격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 임의형 비영리민간단체	
목적 및 활동영역		
의료·보건 단체	※ 예: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단체 등	
교육·연구 단체	※ 예: 초·중·고등 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등	
복지서비스 단체	※ 예: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단체 등	
예술·문화 단체	※ 예: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 단체 등	
시민단체	※ 예: 환경보호단체, 소비자 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 옹호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등	
종교단체	※ 예: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등	
직능단체	※ 예: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친목단체	※ 예: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등	
단체기능		
견제기능수행	주로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조직이 오래되고 재정이 있는 가운데 정치변화에 영향이 적음	
복지기능수행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장애인,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대변기능수행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동성애자단체, 에이즈환자단체 등	
조정기능수행	각종 사회적 분쟁을 조정하는 단체이나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그리 흔하지 않음. 그러나 각종 NGO는 정부와 협력하거나,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도 함	
교육기능수행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시민강좌, 개방대학, 청소년 학교, 여성아카데미, 토론광장, 환경캠프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운영원리를 가르침	

자료: 고경훈 외(2015); 이상락(2012)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의 유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유형 및 분야는 연도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의 경우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 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 유형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분류할 수 있다(〈표 2-4〉 참조).

〈표 2-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유형 및 분야(2019년 기준)

공익사업 유형	공익활동 지원 사업 분야
사회통합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노인층 스마트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함양
사회복지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 및 느린 학습자 학습지원, 소외계층 복지·인권 증진
시민사회	여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자원봉사·기부문화	자원봉사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청소년 사회봉사, 의료봉사, 재능봉사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사회적·경제적 약자 고용 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일용직 고용안정,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환경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방,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 활동,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세계평화 증진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사회안전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 확산, 국민안전
국제교류협력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지원,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npas.mois.go.kr/>)

제2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1.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여성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경험을 여성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실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안태운 외, 2012).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의 순기능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여성정책의 입안과 추진 그리고 실행에 관여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성정책 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거버넌스 이론을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마다 정의가 다양하여 합의된 개념이 쉽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Rhodes, 1996; Jessop, 2003; Stoker, 1998; Ansell & Gash 2007; 이명석, 2002; 전주희, 2018). 이와 같은 이유는 거버넌스란 개념이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통해서 시작되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 중심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가 제기되었고, 이후 UN이나 World Bank에서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국제 거버넌스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심화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의 지역거버넌스가 확대되었다(장연경, 2014).

거버넌스는 프랑스나 영국 등 근대국가의 탄생자체가 시민혁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서양이나 유럽의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개혁의 시도과정에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장지호 외, 2010).

국내에서 거버넌스의 등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공공부문 혁신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김세훈, 2015). 1987년 노조민주화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신규로 생겨나고 시민단체의 수도 급증하였고, 시민단체나 시민중심의 민주화기반이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부문혁신 등 서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버넌스가 정착되었다(전주희, 2018). 이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Pierre and Peters(1998)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해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Jessop(2003)은 거버넌스에 대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주체들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길용, 2017; 전주희, 2018).

2) 거버넌스의 유형

거버넌스의 주체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거버넌스의 유형을 국가중심 거버넌스, 시장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로 분류할 수 있다(김석준 외, 2002; 문순홍 외, 2000).

첫째,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을 갖는다. 기존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통치방식의 정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정부가 변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정부의 역할이 노 젓기에 가까웠다면 방향잡기 역할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접근방법 또는 국가주의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시장중심 거버넌스와 운영논리의 측면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부규모가 아닌 잘못된 통치형태에 돌리면서, 정부의 새로운 통치형태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둔다(정원식, 2002).

둘째, 시장중심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본주의, 시장주의적 관점을 지니며 수평적, 협력적, 참여적 관계를 강조한다. 세부적으로 정부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고객주의 관점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 조달의 방법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성과주의적 관점이 활용된다(정정길, 2000).

셋째,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협력과 공조가 강조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 형성 등 민주주의적 특성을 강조한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는 '정부중심'과 '시장중심'의 틀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체계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NGO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NGO는 특히 정부와 시장의 견제 역할, 국제사회의 협력 역할, 공공정책과정의 참여 역할을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은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실현차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오혜란, 2004).

Peters(2001)는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에서 거버넌스의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적 거버넌스는 정부실패의 대안이자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적이고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 비용절감 등을 강조하였으며, 둘째, 참여

적 거버넌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모형으로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협상과 협의)을 강조하였다. 셋째, 신축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변화에 관행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적합한 정책을 만들려는 모델로 가상의 조직을 통한 실험적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넷째, 탈규제적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행정 효율성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자율적 관리를 통한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Peters의 거버넌스 유형 분류

구분	시장적 거버넌스	참여적 거버넌스	신축적 거버넌스	탈규제적 거버넌스
정책목적	독점	계층제	불변성	내부규제
조직구조	탈집중	평면조직	가상조직	특별정부
관리방식	성과제	목표관리제, 팀제	일시적 인력관리	자율적 관리
정책기저	시장적 동기	협상과 협의	실험적	기업가적 정부
국민의 관심	저비용	관여 및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능동성

자료: Peters(2001); 전주희(2018)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Newman(2001)은 집권-분권차원과 지속성(질서)-혁신(변화) 차원을 결합하여 거버넌스의 유형을 계층제 유형, 합리적 목표 유형, 개방체제 유형, 자치거버넌스 유형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계층제 유형은 집권화되고 지속성 및 질서를 강조하며, 합리적 목표 유형은 집권화되고 혁신 및 변화를 강조한다. 개방체제 유형은 분권화되고 혁신 및 변화를 강조하며, 자치 유형은 분권화되고 지속성 및 질서를 강조하였다(최성욱, 2004).

Kooiman(2003)은 거버넌스로서의 통치에서 국가-사회 중심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치거버넌스는 사회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사회의 자기조직적 네트워크가 생성된다고 파악하며, 국정운영의 관점에서도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자기조정능력을 중시한다. 둘째, 협력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존중 원리에 기초한 협력관리와 의사소통 거버넌스를 중시한다. 셋째, 계층제거버넌스는 국가관료제 중심의 계층제를 토대로 한 거버넌스적 국정운영을 강조한다(강병준, 2011)

따라서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가 맺고 있는 결합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그 통치 능력이나 방식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더불어 거버넌스의 유형에는 각 주체들 간의 독립성 유지와 연대형성 등 관계에 따라 독립형(각자 독립성 유지), 연립병존형(자율성과 연대 공유), 네트워크형(상호 긴밀하게 연결)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강병준, 2011).

3) 협력적 거버넌스

최근 연구에서 여성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로 여성정책 거버넌스는 젠더이슈를 행정기구 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동시에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의제 반영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즉, 젠더 세력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마경희, 2010)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협력의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김희경 외,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보다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 등 여성단체 자체에 초점을 두어 연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우선 강조되는 거버넌스 유형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대상으로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과 활성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협력은 여러 부문의 행위자들 간의 이해공유, 목적 공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여러 행위자들이 서로의 이해와 문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상호 조정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숙의과정이나 상호조정행동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된다. 한편, 사회적 복잡성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즉, 사회적 복잡성의 문제해결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협력과정이자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교류해서 만들어지는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것이다(전주희, 2018).

Ansell and Gash(2007)는 단순히 의견조율이나 자원공유 차원의 과정을 넘어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조직간 경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정의하였다.

이명석(2010)은 계층제, 네트워크 및 시장 등 3가지 사회적 조정양식의 최적의 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는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전의 거버넌스와 차이를 보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만의 몇 가지 특성으로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문제해결 상호작용’, ‘비정부조직의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참여’, ‘공식적 집합행동’, ‘상호의견일치의 추구’ 등을 설명하였다(〈표 2-6〉 참조).

Provan and Lemaire(2012)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다차원 참여’, ‘네트워크디자인’, ‘적합한 거버넌스’, ‘정당성’, ‘안정성’ 등 다섯 가지의 분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기준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조직구성원들이 협력적 네트

워크 목표를 공유했는지, 시민단체나 조직이 협력적 네트워크에 참여에 따른 내부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특정한 이벤트 같은 것에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와 시민단체가 구색을 맞추는 데에 '단순히 참여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기준이 된다.

〈표 2-6〉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비교

구분	Ansell & Gash(2008)	이명석(2010)
주도하는 주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상호작용	민간부문의 주도로 가능. 단, 협력적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호작용 주체	비정부 조직이나 사회구성원의 참여	상호작용의 주체가 아니라 유형이 중요
협력의 유형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단순 의견청취나 자문도 포함됨. 단, 통제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라 할 수 없음
협력의 구조화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집합적인 행동	공식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협력도 포함
의견일치	의견일치 추구	의견일치를 추구하지 않는 협력도 포함 가능
상호작용 대상	공공문제 해결과 관련한 상호작용	-

자료: 이명석(2010); 전주희(2018)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2. Salamon의 네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실패현상

수원시 여성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이전에 여성단체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여성단체에게 필요한 역량과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alamon(1987)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실패현상을 들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거래비용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치러야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특정영역에 개입하려면 우선 문제를 인식하여야 하고, 법률이 준비되어야 하며,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여야 정책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지원되어 집행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뜻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지원유무나 제도화와는 무관하게 특정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보다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문제가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면 정부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문제해결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필요해하는 경우나 불충분할 경우 이루

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정부의 개입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된다. 정부의 개입을 이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패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박애적 불충분성(Philanthropic insufficiency)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Salamon, 1987). 우선 비영리민간단체는 내·외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기가 어렵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무임승차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경기의 침체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안정적인 자원획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재정자원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격차도 문제가 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대부분의 경우 활동영역이 일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과 줄 수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충분한 양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박애적 배타주의(philanthropic particularism)를 들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는다(Salamon, 1987).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특정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대상이 일반대중이기 보다는 특정집단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alamon, 1987; 김복태 외, 2018). 물론 이것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집단을 공평하게 도울 수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증가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박애적 온정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과 방식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집단의 결정권, 영향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Salamon, 1987).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요구되긴 하지만 비영리단체는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조나 정권 및 지역의 방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적인 지원(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회 전체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의성이 적다. 따라서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공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애적 아마추어리즘(philanthropic amateurism)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Salamon, 1987).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일반적 도움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이나 의료, 법률서비스의 무료제공을 위해서는 이들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의사나 법률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나 자원봉사로 일부는 공급할 수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부족한 재원으로는 이러한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슈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기준을 제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장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점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표 2-7〉 Salamon의 네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실패현상

구분	설명
박애적 불충분성 (philanthropic particularism)	비영리민간단체는 강제성이 없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
박애적 배타주의 (philanthropic particularism)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모든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그 활동영역과 서비스공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박애적 온정주의 (philanthropic paternalism)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집단(지역유지나 저명인사)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philanthropic amateurism)	비영리민간단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므로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 이상락(2012)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Salamon(1987)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 가지 실패현상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김복태 외, 2018). 첫 번째, 박애적 불충분성의 관점에서 내·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여성단체의 안정적인 자원확보 방안의 모색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 자체의 역량강화방안 중 재정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안정적 회원확보와 회비의 정기적 모금을 들고 있다.

두 번째, 박애적 배타주의 관점에서 여성단체의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영역 및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여성정책 수요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성단체의 역할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할 방안 및 여성단체의 정책과정 참여역량 증진방안 모색 등이 강조되

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수혜 범위 확대 및 여성정책 수요발굴을 위하여 지역의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용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세 번째, 박애적 온정주의 관점에서 특정집단의 영향력, 특정 이슈뿐만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관점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단체의 경우 젠더라는 해결되지 않은 공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로써 젠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강조되고 있다. 즉, 젠더에 대한 감수성과 의지를 가진 외부전문가나 지역 여성단체 및 다른 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관점에서 여성단체의 리더의 역량, 리더십, 활동가의 역량, 외부전문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강조되고 있다.

수원시 여성정책의 거버넌스는 여성단체와 수원시의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수원시청이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띠고 있다. 이상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여성단체가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올바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을 갖춰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한 여성단체만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안하거나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거버넌스 주체들 보다 다양한 주제와 의견 등 역할의 범위가 넓고 집중을 필요로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수원시 여성단체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희소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목표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모두 특성상 자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불충분한 자원 문제(박애적 불충분성), 소수집단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박애적 온정주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alamon, 1987).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 혹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협력을 통해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외부 전문성 활용함으로써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증진이나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김희경 외, 2014).

제3절 역량강화에 대한 이해

1. 역량강화의 개념

역량강화는 ‘capacity building’, ‘empowerment’ 등의 용어로 해석되며, ‘capacity building’은 어떤 적절한 기능을 효과적, 효율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 조직,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milen, 2001; 허소영, 2013). ‘empowerment’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개인, 조직, 지역사회 등의 주체가 자신의 일상에 대한 결정능력을 획득해가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Rappaport & Zimmerman, 1988; 허소영, 2013).

역량강화 개념에 대한 합의는 연구자들마다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온전한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주로 역량강화의 개념을 일련의 과정(목표, 개입유형, 결과)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아 학자별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역량강화와 접목시켜 ‘요구되는 행동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자기 효능감)을 형성해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촉진시키는 경험과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 정의함으로써 ‘힘 배분’이라는 개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능력신장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였다(신국희, 2002).

Rappaport & Zimmerman(1988)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 결정과 지역사회생활에 있어서 민주적 참여 모두를 제안한다. 역량강화는 개인적 통제감이나 영향력 등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실제 사회적 영향, 정치적 힘, 그리고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고려 모두를 시사한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이웃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동시 다단계적인 구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hera & Wells, 1999; 박종미, 2010).

Staples(1990)는 힘(power)은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얻어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역량강화는 누군가가 힘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을 얻고 힘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동을 통해 성취되는 능동적 의미로 해석한다(김미옥, 2005).

Parsons(1991)는 역량강화를 힘(power)을 획득하는 과정으로써 힘을 얻고, 힘을 개발하며, 힘을 활성화시키고, 힘을 축적해 나가며, 혹은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박종미, 2010).

Foy(1994)는 조직구성원들이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결정권이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는 동시에 조직이나 개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신국희, 2002).

2. 역량강화의 실천효과

역량강화의 효과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개인 내적, 대인적, 사회·정치적 수준에서 나타난다(Gutierrez, Parsons, Cox, 1998).

개인 내적 변화는 분리된 개인보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강화에는 인간의 집합적 행동, 기술발달, 문화적 인식이 포함되어 동기, 통제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난다(Zimmerman, 1995; 김진경 외, 2011).

대인적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다. 대인관계의 역량강화는 자신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대인관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등 새로운 기술습득과 적응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원동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정치적 변화는 자신의(개인 내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정도를 말한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직접적인 사회·정치적 활동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Zimmerman & Rappaport(1988)의 연구는 역량강화의 효과가 주민참여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효과가 수원시민의 참여 증가와도 관련이 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심리적 차원에서 개인 내적 역량강화는 개인의 능력과 동기유발, 공공영역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여 역량강화와 참여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역량강화 실천의 효과는 각각의 변화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대인적, 사회·정치적인 변화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둘째, 개인 내적 변화가 대인적 변화와 사회·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김진경 외, 2011).

〈표 2-8〉 역량강화의 실천효과

개인 내적 변화	대인적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 • 자립심 • 자존감 • 비판적 사고 • 자기자각 • 존재감 • 권리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술 • 도움의 요청 • 새로운 기술 연습 • 자원평가 • 주장 •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행동/참여 • 기여 • 보상 • 환경에 대한 통제감

자료: Gutierrez & Parsons & Cox(1998); 김진경 외(2011)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와 같이 역량강화는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해석이 다양하며, 역량강화가 실천되는 수준이 개인적 심리변화에서 제도 및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역량강화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의 개념이 과정적이고 결과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서 논의된 대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Gutierrez et al, 1995; Rappaport & Zimmerman, 1988; Zimmerman, 1995; 김진경 외, 201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 모델

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여성운동 및 여성단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재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 및 여성단체에 대한 연구는 여성단체에 대한 구분과 범위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연구대상 선정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제는 각 지역의 여성단체 현황·역량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도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시기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여성단체의 요구되는 사안으로는 자생력 증진방안 도출, 인적자원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여성단체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구자별 여성단체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허성우(1997)는 대전광역시 여성단체를 분석하였는데, 다수의 단체들이 중앙부처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목적과 이념은 성차별 개선의지가 낮아 여성단체로서 정체성이 미약하다고 분석하였으며, 대전 여성단체들의 특성으로는 단체의 자발성이 부족하고, 직능단체가 많아 일반 여성의 접근이 어렵고, 주로 40~50대의 전업주부층이 회원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여하는데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앞서 연구를 토대로 허성우는 1998년에 수행한 연구에는 각 지역 여성운동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관하여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여성문제에도 적용됨을 지적하였다.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족법개정운동’,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 ‘페미니즘의 대중화 현상’ 등 지역·사회적 환경에 따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모색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안태운 외, 2012).

정현백 외(1998)는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현황, 문제, 개선점들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기초로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

사를 토대로 제시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단체내적 과제와 여성단체 간의 관계, 지자체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확충이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단체내적 관제로서는 인적기반의 확충, 사업의 합리화, 재정기반의 확충, 관의존적 관계의 탈피가 기본이 되었다. 둘째, 여성단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슈의 적절한 포착과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조건과의 결합, 단체 간 힘의 적절한 균형, 대중동원력, 전문가의 이론적 지원,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확대와 민주화의 측면, 재정지원에 대한 대안적 방식모색, 재정지원 원천의 다양화라는 세 가지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여성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확고한 자기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언론기관, 의회, 타시민단체 등으로 관계망을 확장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도정·시정 연구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성단체 실태와 여성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단체 관련 연구가 진행된 지역으로는 전라북도(2003), 인천광역시(2007), 경기도(2012), 서울특별시(2015), 충청남도(2016), 제주특별자치도(2018) 등이다.

이윤애(2003)은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정보교환이나 공동이슈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성단체의 조직형태는 단독조직이 91.6%, 연합체/협의체는 8.4%에 그쳤다.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정적 요인으로는 재정 취약성, 자원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위주의 여성운동단체 활동, 여성단체의 자립성 문제(독립공간, 상근활동가, 회원확보 등), 낮은 정보화수준 등을 지적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소모임 활성화, 잠재적 인적자원 개발, 자원의 다양화,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운영,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지원과 정책제안의 호혜적 관계정립, 효율적인 사업비 지원, 공동기금 설치노력, 지도자 양성, 성인지력 향상 교육, 정보화구축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홍미희 외(2007)은 인천지역 여성단체의 실태와 조직적 특성을 조사하고 여성정책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 당시 인천시 여성단체는 인천여성단체협의회(21개)와 인천여성연대(6개)가 소속 단체들로 대변될 수 있으며, 분석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인천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이후에는 성 관련 문제의 해소를 외치는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하였다. 여성정책 과정에서의 역할로는 다른 지역들과 동일하게 인력충원과 재정부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여성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책담당자와 여성단체들 간의 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안태운 외(2012)은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활동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경기도

와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협력관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한 여성단체 4개의 연합단체(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첫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비중이 다른 세 개 단체에 비해 현저히 큰 점과 둘째, 네 개 도 단위 단체들 간 규모상의 현격한 차이와는 무관하게 연대와 소통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와 여성단체의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단체 공간 지원', '실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공모사업 지원방식의 개선', '단체회원의 충원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여성단체 회원의 정보화 지원', '도내 무소속 여성단체의 인큐베이팅' 등의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김희경 외(2014)은 서울 여성 NGO, 비영리민간단체 중 여성 관련 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4년 연구 당시의 서울시 여성 NGO 현황은 108개였으며 여성가족, 출산육아, 다문화 등으로 설립목적 및 활동유형을 분류하고, 여성가족분야 NGO가 78개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육아분야 NGO 12개, 다문화분야 NGO 18개로 나타났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여성 NGO의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방법 변화', '풀뿌리 여성조직은 서울이 가진 사회적 자본으로 지속성 유지' 등의 지원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및 사업 개선과 서울시 여성 NGO의 성장 기반 구축 등 두 가지 지원 정책분야를 설정하여 세부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태희원 외(2016)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여성 NGO를 분석하였으며 충남여성 NGO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역량분석 그리고 정책요구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첫째, 여성 NGO가 정책파트너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데 정책이 미흡하였으며, 둘째, 여성풀뿌리조직이 활동기반을 넓혀가는 반면 관련 정책은 가시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크게 '지자체·여성 NGO 협력 강화', '여성 NGO·네트워크 활성화', '여성 NGO 역량강화 지원' 등 3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각 영역별로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화진(2018)은 제주지역 여성단체의 성평등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총 9개 회원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분회가 따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제주여성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2개의 소속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과제로는 활동가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 필요성, 여성단체 활동에 있어 예전 관행 위주의 활동으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적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부족 및 여성의 참여부족, 단체의 변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을 들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한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여성단체의 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여성단체협의회 정관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여성단체 자생력 함양을 위한 공유 공간 제공, 행정 관련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성평등 활동실현을 위한 단체 간 연대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세대 간의 소통강화 방안 마련, 20~30세대 젠더 활동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제언하였다.

여성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지방정치의 재개와 활성화, 그리고 진보적 여성단체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지역 여성단체의 역할과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여성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지방정치와 행정, 통치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단체가 역할수행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안태운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수원시 여성단체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별 제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결합하여 기존 수원시 여성단체가 지닌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며, 여성단체의 목표실현을 위해서 수원시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표 2-9〉 참조).

〈표 2-9〉 여성단체 관련 선행연구 정리

구분	출처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1	허성우(1997)	성차별 개선의지가 낮은 여성단체, 단체의 자발성 부족, 다수의 직능단체(여성접근의 어려움), 전업주부층 중심의 회원구조	'가족법개정운동',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 '페미니즘의 대중화 현상' 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여 지역적·사회적 환경에 따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모색이 필요
2	정현백 외(1998)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 취약, 지역사회봉사 단체의 성격(사회복지 관련 활동 위주), 회원모집방식(인맥을 통한 모집), 조직구조 및 재정구조 열악	여성단체 자체의 자생력 증진, 인적기반 확충, 사업의 합리화, 재정건정성 확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확충(대학, 연구소, 의회, 언론기관)
3	이윤애(2003)	재정 취약성, 적은 운동단체의 수, 여성단체의 자립성 문제(독립공간, 상근활동가, 회원확보), 낮은 정보화 수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소모임 활성화, 잠재적 인적자원 개발, 자원의 다양화,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운영, 지도자 양성, 성인지력 향상 교육, 정보화구축지원
4	홍미희 외(2007)	인력충원 및 재정부족문제(이전 선행연구와 동일)	여성단체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정체성 유지, 정책담당자와 여성단체들 간의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5	안태윤 외(2012)	경기도 내 여성단체들 간의 규모상 현격한 차이(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타 연합단체에 비해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큼)	경기도와 여성단체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단체 공간 지원 실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공모사업 지원방식의 개선, 단체회원의 충원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제시, 여성단체 회원의 정보화 지원, 경기도 내 무소속 여성단체의 인큐베이팅
6	김희경 외(2014)	서울시 여성NGO는 여성가족, 출산육아, 다문화로 구분하였을 때, 여성가족(78개), 다문화(18개), 출산육아(12개) 순으로 차이를 보임	여성 NGO의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방법의 다변화, 풀뿌리 여성조직의 지속성 유지,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및 사업 개선과 서울시 여성NGO의 성장 기본 구축
7	태희원 외(2016)	여성NGO 역량강화 지원정책의 미흡, 여성 풀뿌리조직은 활동기반을 넓혀가는 반면 관련 정책은 미비	지자체·여성NGO 협력 강화, 여성NGO·네트워크 활성화, 여성NGO 역량강화 지원
8	이화진(2018)	활동가와 회원들의 고령화, 여성단체의 과거 활동 중심의 관행 팽배(시대환경 부적응), 예산부족 및 참여부족	역량강화 단계별 계획수립, 공유 공간 제공, 실무 관련 역량강화 교육(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젊은 세대 젠더 활동가 육성

2. 연구분석 모델

수원시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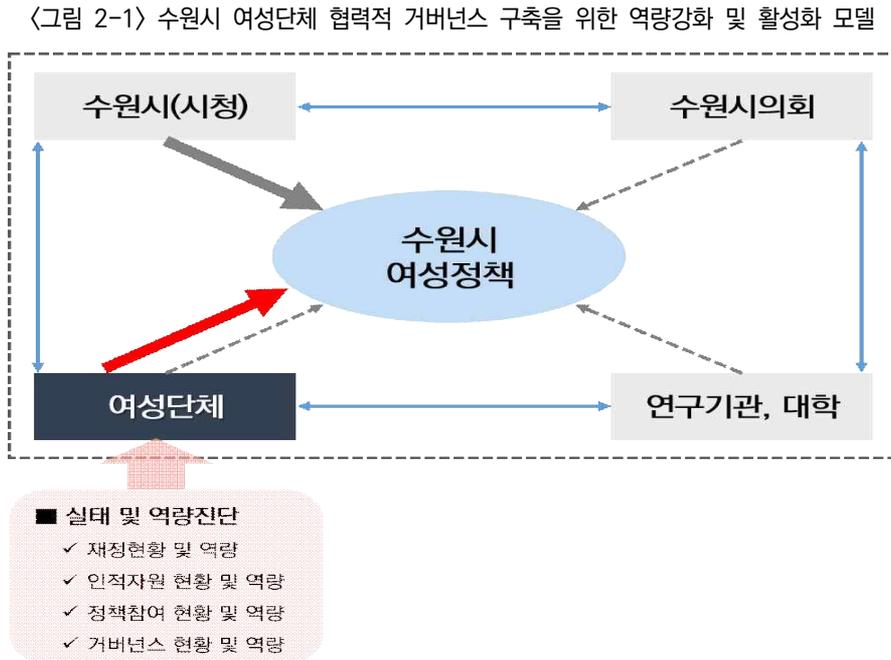
더불어 양성평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대표, 수원시의회의원, 양성평등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 체계와 달리 수원시가 주도로 다른 네트워크 주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여성단체를 분석하는데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모델로 연구하는 이유는 수원시 주도의 여성정책형성,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다른 네트워크 조직(수원시, 수원시의회, 연구기관 및 대학)에 비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 그리고 여성을 권위증진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등이 다른 네트워크 조직에 비해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수원시 여성정책에 대하여 제안된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에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다른 네트워크 조직과 동등하지 않게 되면 수원시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그리고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역할과 권한은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수원시 여성단체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만 가지게 되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수원시 여성정책 수립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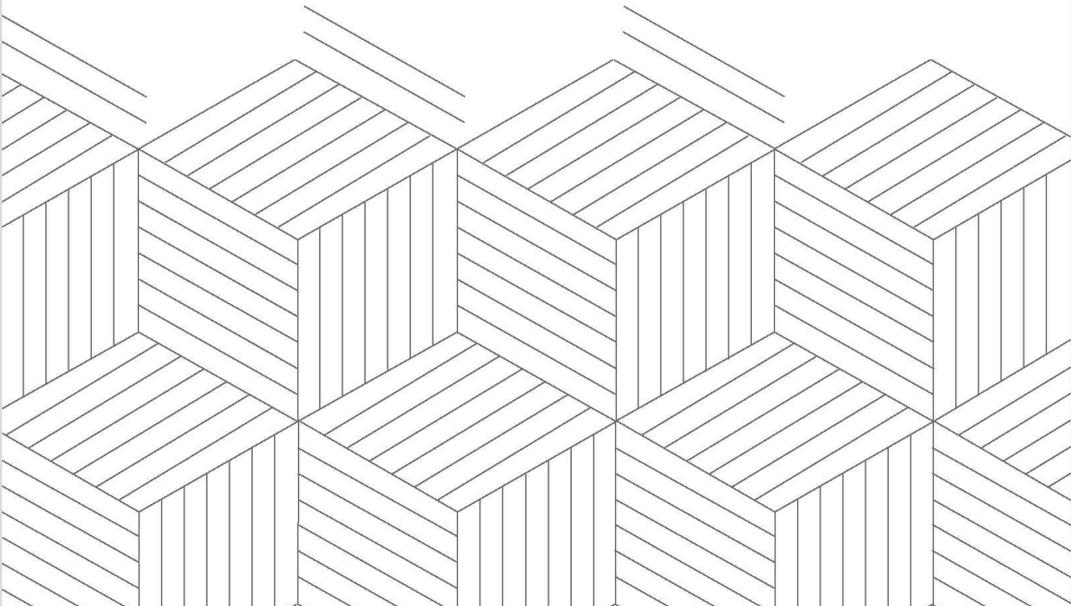
수원시 여성단체별 실질적인 조직을 구성되고 난 후의 평가와 피드백이 참여와 협력 그리고 수원시 여성단체의 정당성과 안정성 등의 개념이 적용되었는지, 상호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이자 파트너로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켜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단체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역량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수집된 기초자료를 통해 역량강화 및 활성화 요인을 제언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 되어 있는 거버넌스의 구조적 불균형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2-1> 참조).



제3장 여성단체 현황

제1절 여성단체 현황
제2절 여성단체 관련 법률 및 정책



제3장 여성단체 현황

제1절 여성단체 현황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성단체 현황

1) 비영리민간단체³⁾ 현황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579개에서 2018년 14,284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단체 수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2013년 1,413개에서 2018년 1,658개로 245개의 단체가 늘어났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10,166개에서 2018년 12,627개로 2,461개의 단체가 늘어났다. 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연도별·등록구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 수	11,579	12,252	12,894	13,464	13,933	14,284
중앙행정기관	1,413	1,494	1,561	1,599	1,624	1,658
전년대비 증감률	5.7	4.5	2.4	1.6	2.5	2.5
지방자치단체	10,166	10,758	11,333	11,865	12,309	12,627
전년대비 증감률	5.8	5.3	4.7	3.7	2.8	2.6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3)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단체의 정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책이 있었으나,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단체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사라지고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통합되어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여성단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분기별 현황자료에서 주된 사업 중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별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법인단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에 따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총 1,678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54개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193개, 외교부 187개, 환경부 179개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12,627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본청과 북부청을 합쳐서 2,222개로 가장 많으며 서울특별시 2,142개, 전라북도 942개, 부산광역시 827개, 경상북도 787개 순으로 등록단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수

(단위 : 개)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단체수	기관명	단체수
기획재정부	7	농촌진흥청	5
공정거래위원회	8	산림청	18
금융위원회	7	중소벤처기업부	3
법제처	1	특허청	2
국가보훈처	15	산업통상자원부	12
해양수산부	31	식품의약품안전처	2
국세청	1	환경부	179
통계청	1	고용노동부	47
통일부	170	해양경찰청	9
외교부	187	농림축산식품부	43
법무부	12	문화재청	8
국방부	36	방송통신위원회	8
경찰청	11	국토교통부	10
교육부	52	국가인권위원회	1
보건복지부	193	소방청	12
기상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문화체육관광부	177	행정안전부	254
여성가족부	108	인사혁신처	4
소계		1,658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단체수	기관명	단체수
세종특별자치시	33	서울특별시	2,142
부산광역시	827	대구광역시	450
인천광역시	683	광주광역시	633
대전광역시	582	울산광역시	376
경기도(본청)	1,622	경기도(북부청)	600
강원도	346	충청북도	478
충청남도	456	전라북도	942
전라남도	560	경상북도	787
경상남도	742	제주특별자치도	382
소계	12,627		
총계	14,282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

2)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에서 영역별 '주된 사업'의 '여성'을 검색하여 분류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는 중앙행정기관은 63개로 전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3.8%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703개로 5.6%를 차지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및 비율

(단위 : 개, %)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계	1,658	12,627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수	63	703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비율	3.8	5.6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2018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수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27개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6개, 외교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4개 순으로 등록 단체 수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본청과 북부청을 합쳐서 109개

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101개, 전라북도 79개, 경상남도 57개, 전라남도 45개 순으로 등록 단체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수

(단위 : 개)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단체수	기관명	단체수
기획재정부	-	농촌진흥청	-
공정거래위원회	1	산림청	-
금융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	-	특허청	1
국가보훈처	1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세청	-	환경부	2
통계청	-	고용노동부	4
통일부	3	해양경찰청	-
외교부	4	농림축산식품부	3
법무부	-	문화재청	1
국방부	-	방송통신위원회	-
경찰청	-	국토교통부	-
교육부	3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1	소방청	1
기상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문화체육관광부	6	행정안전부	4
여성가족부	27	인사혁신처	-
소계	63	총계	1,658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단체수	기관명	단체수
세종특별자치시	2	서울특별시	101
부산광역시	26	대구광역시	29
인천광역시	29	광주광역시	44
대전광역시	21	울산광역시	33
경기도(본청)	80	경기도(북부청)	29
강원도	15	충청북도	31
충청남도	32	전라북도	79
전라남도	45	경상북도	29
경상남도	57	제주특별자치도	22
소계	703	총계	12,627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2. 수원시 여성단체 현황

수원시 내 여성단체는 총 23개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19년 2월 기준 16개 단체 약 4,399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수원시 내부자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84년 2월 5일에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로 설립되어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나눔과 공익에 관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새수원신문, 2018)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로는 사)한국부인회수원시지회, 수원시어머니합창단, 수원소방서의용소방대여성연합대, 교통안전공단수원교통안전어머니회, 사)한국사법교육원수원시민로스쿨, 사)대한어머니회수원시지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수원시지회,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수원시지회, 수원시레이나벨리예술단, 수원꽃예술연합회, 수원시여성나눔봉사회, 한국자유총연맹수원시여성회, 수원시여성리더회, 나눔사랑민들레, 경기전통의례연구원수원지회,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수원지부가 있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내 단체별 회원수는 평균 약 101명이며 수원시여성나눔봉사회의 회원수가 500명으로 가장 많으며, 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단체는 4곳, 100명 미만인 단체가 12곳으로 대체적으로 여성단체는 중소단체인 것으로 확인된다(〈표 3-5〉 참조).

〈표 3-5〉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명 및 주요사업 현황

구분	단체명	주요사업	회원수
1	사)한국부인회 수원시지회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한 교양사업	53
2	수원시어머니합창단	여성 합창 연습 및 공연, 자선음악회, 정기음악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35
3	수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연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안전문화 홍보, 상황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200
4	교통안전공단 수원교통안전 어머니회	교통안전교육,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지역사회 봉사활동	32
5	사)한국사법교육원 수원시민로스쿨	법률교육의 대중화, 무료법률상담, 청소년선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66
6	사)대한어머니회 수원시지회	청소년 보호, 교육, 여성 평생교육, 여성복지, 환경보호, 지역사회 봉사 활동	35
7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소비자고발, 소비자 상담, 주부교실, 주부대학	71

구분	단체명	주요사업	회원수
8	사)한국여성 지도자연합 수원시지회	여성,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의 여성지도자 양성, 친목도모, 지역사회 봉사활동	30
9	수원시레이나벨리 예술단	자선공연, 정기공연, 지역사회 봉사활동	153
10	수원꽃예술연합회	정서함양, 문화예술교류, 친목도모, 환경보호	191
11	수원시여성 나눔봉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500
12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여성회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지역사회 통합발전, 지역사회 봉사활동	36
13	수원시여성리더회	여성지도자 양성, 소외이웃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55
14	나눔사랑민들레	지역사회 봉사활동	80
15	경기전통의례연구원 수원지회	전통의례 문화교육, 효(孝)문화 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50
16	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수원지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여성 지도자 발굴 육성, 여성 의원 활동 정보제공	3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사업추진과 실적은 2018년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취임한 최수아 회장의 취임인터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새수원신문, 2018).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2017년도 사업추진 및 실적으로는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4회 다문화정책포럼에서 대상수상, 독일평화소녀상 제막식참석, 제주도에서 회원들의 역량강화교육 및 단체 간 유대강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집중홍보 및 양성평등실현 캠페인,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10회 다문화 한가족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제32회 경기여성의날 참석, 제8회 여성가사도우미 무료교육 실시 및 무료알선,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광고호수공원에서 다둥이축제 실시, 수원행궁 광장에서 차 어울림 한마당축제 실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제2회 양성평등축제 실시, 만석공원에서 제14회 양성평등을 위한 수원여성문화축제 실시, 남이섬-아침고요수목원에서 2017 여성리더 공동 워크숍 개최, 경기도 여성의전당 돌로스문화홀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음악회 개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명품김치 나눔행사 실시, 2017 연말시상에서 수원시장상 수상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수원시가 주최하는 500인 이상 행사에 차(茶)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봉사, 여성리더 워크숍, 중학교 2학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다

문화 한가족축제 알뜰바자회, 여성가사도우미 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인권보호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수원시 양성평등 축제 등(새수원신문, 2018)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여성일자리를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와 경제적 활동의 제한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관리사 교육(청소관리, 세탁관리, 침구와 옷장수납, 옷개는 방법, 재활용품DIY, 냉장고 및 주방정리, 자녀방 정리, 가사서비스 교육 등)을 중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여활동으로는 제24회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5개 부문에 입상(꽃꽂이, 서예, 사군자, 회화, 한지공예)하는 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수원시 내 또 다른 여성단체로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별도의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체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단체별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총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YWCA,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가 이것이다. 단체별 회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한 반면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가족지원, 여성인권운동, 성폭력지원, 양성평등, 민주적 여성주의 조직, 여성노동 상담 및 교육, 여성폭력 상담 및 지원, 여성 노동자 권익보호 등 여성운동 및 교육 등 단체별 성격에 맞게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 소속 단체명 및 주요사업 현황

구분	단체명	주요사업	회원수
1	사)수원가족지원센터	가족교육, 가족상담, 문화활동, 아동안전교육, 가족여행 등	100명
2	수원YWCA	여성사회 교육, 청년활동, 선교활동,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 여성인권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무료 직업 안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2,300명
3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에게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sexuality)을 배우고, 행복한 '성'을 꿈꾸기	100명
4	수원여성회	민주적인 여성주의 조직만들기,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정책제안 및 생활정치 실현과 나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놀이, 체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6.15공동선언의 실현과 지역통일운동의 활성화	500명
5	수원일하는여성회	글쓰기, 풍물, 인형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방가 후 무료 공부방 운영,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여성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전개	180명
6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 상담, 여성노동 교육 상담, 여성 노동 정책연구 및 노동 대응사업, 여성노동 홍보 선전사업 등	108명
7	사)수원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폭력근절 캠페인 등	340명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수원시 내 여성단체인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 내 단체별 대표의 임기는 대체적으로 2년에 1회 연임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다만 수원여성의전화는 3년, 1회 연임이며 수원가족지원센터는 별도의 규정 및 임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수원시 여성단체별 대표의 임기

단체명	대표의 임기	단체명	대표의 임기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2년, 1회 연임	수원가족지원센터	별도의 규정 및 임기 없음
수원YWCA	2년, 1회 연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2년, 1회 연임
수원여성회	2년, 1회 연임	수원일하는여성회	2년, 1회 연임
수원여성노동자회	2년, 1회 연임	수원여성의전화	3년, 1회 연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수원시 여성단체를 활동수준, 조직구준, 법적요건, 단체기능, 공익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표 3-8〉 참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수원시지부 혹은 수원시지회로

서 활동수준은 모두 지방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구조는 연합형이 다수 속해 있으며, 법적요건은 법인체형이 가장 많으며, 단체기능은 복지기능이 가장 많았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공익사업 유형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여성단체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의 ‘시민사회’ 유형에 가장 많이 속한다.

〈표 3-8〉 수원시 여성단체 유형별 분류

구분	단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⁴⁾				행정안전부 ⁵⁾
		활동수준	조직구조	법적요건	단체기능	공익사업유형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사)한국부인회 수원시지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시민사회
	수원시어머니합창단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수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연합대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교통안전공단 수원교통안전 어머니회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사)한국사법교육원 수원시민로스쿨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교육기능	시민사회
	사)대한어머니회 수원시지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교육기능	사회복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교육기능	시민사회
	사)한국여성지도자 연합 수원시지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시민사회
	수원시레이나벨리 예술단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수원꽃예술연합회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사회복지
	수원시여성 나눔봉사회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여성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시민사회
	수원시여성리더회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구분	단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⁴⁾				행정안전부 ⁵⁾
		활동수준	조직구조	법적요건	단체기능	공익사업유형
	나눔사랑민들레	지방	협의형	임의형	복지기능	자원봉사 기부문화
	경기전통의례연구원 수원지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사회복지
	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수원지부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교육기능	시민사회
수원시 여성 단체 네트 워크	사)수원가족지원센터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교육기능	사회통합
	수원YWCA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시민사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교육기능	시민사회
	수원여성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사회통합
	수원일하는 여성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복지기능	사회복지
	수원여성노동자회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대변기능	시민사회
	사)수원여성의 전화	지방	연합형	법인체형	대변기능	시민사회

주: 수원시 여성단체 유형별 분류에서 '단체기능' 및 '공익사업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만 선정하여 작성함.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은 단체들이 다수 존재함

제2절 여성단체 관련 법률 및 정책

1. 여성단체 관련 법률

1) 여성단체 관련 지원 법률

2018년 3월 27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단체와 관련한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단체가 명시된 부분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포괄적 의미로 명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4) <표 2-1> 설명 참조

5) <표 2-2> 설명 참조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8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 8. 1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8

제29조의3(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단체가 지원받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면, 여성단체의 상위개념인 비영리민간단체(여성을 포함한 전체 영역)의 지원 법률도 제정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기 위한 기준(정의), 등록방법, 지원방안, 지원사업의 선정 등이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원시 여성단체는 전국단위 비영리민간단체에 속하며 수원지사 혹은 수원지회를 둔 단체이지만, 수원시에만 한정하여 구성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본 구성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에 속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도 비영리민간단체 정의에 속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원시 내 여성단체의 다수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중략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원시도 기본적인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에서는 여성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총괄하여 지칭하였으나, 수원시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여성단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향후 수원시가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부터 여성단체의 지원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제33조(기능)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4조(구성 등)에는 여성단체 대표가 위원회에 위촉받도록 되어 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6장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45조(기금의 용도)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7. 9. 27.] [조례 제3706호, 2017. 9. 27., 일부개정]

수원시(여성정책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5.11.13)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15.11.13)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5.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3조부터 제115조, 같은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수원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6.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

중략 ...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 (개정 2015.11.13)

제3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3)

제3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중략 ...

제3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실·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여성단체대표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개정2015.11.13)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략 ...

제6장 수원시양성평등기금(개정 2015.11.13)

제4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분항 신설 2015.11.13>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개정 2015.11.13)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5.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가정폭력방지법」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8.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9.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13.)

2. 여성단체 관련 정책 및 예산

1) 중앙행정기관 여성단체 관련 정책

앞서 언급한 한 것처럼 여성단체 관련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 여성발전기금(현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매년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해 여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복태 외, 2018).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공모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에는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사업유형 적합한 공모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를 선정하여 사업별 최대 2천만원(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표 3-9〉 참조).

〈표 3-9〉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유형별 공모사업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일상 속 성차별 언어개선, 성별갈등 해소 등) 대중매체의 남녀차별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여성·평화안보’ 등 글로벌 성평등 인식 확산 성평등 실천 캠페인 여성친화도시 민간 협업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기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 강화 및 예방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기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아동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역량강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 기타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자료: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 홈페이지(wsp.mogef.go.kr)

2019년에 선정된 사업은 총 20개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에 13개 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여성사회참여 확대’는 5개 사업, ‘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2개 사업으로 사업유형에 따른 지원 단체 수의 차이를 보인다(〈표 3-10〉 참조).

〈표 3-10〉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선정과제

지원과제	단체명	사업명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사)광주시민방송	성평등 문화 확산 미디어 프로젝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적 도시재생 커뮤니티 매핑
	사)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글로벌 여성항일독립 운동 특별전
	당진어울림여성회	차별NO, 편견NO 성평등한 당진 만들기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양성평등 팩트 찾기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일상 속 성차별 언어개선을 위해 '너도 함께 행동하자 유투비 behave'
	사)여성문화네트워크(WIN)	글로벌 성평등 인식 확산 문화운동 '2019 히포시 코리아'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자기만의 방 2019
	사)역사여성미래	아동의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역사 속 여성 인물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양성평등! 민주주주를 실현하다!
	사)열린여성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안전지도 제작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평화, 안보(WPS)와 성평등한 한반도 이니셔티브 구상 프로젝트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운동, 계보를 잇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전국곳곳 여풍당당!"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젝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사회를 위한 일상과 정치를 잇는 젠더 정책 및 새로운 젠더 이슈 마련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한반도 평화이행기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평화리더십 아카데미
	사)한국YWCA연합회	성평등한 일자리 세상, 우리가 만들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강화	부산여성회	청소년디지털성폭력예방 안전, 안심 디지털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의심에서 지지로

자료: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 홈페이지(wsp.mogef.go.kr)

2) 중앙행정기관 여성단체 관련 예산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은 2019년 39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355백만원은 공모사업 단체지원, 42백만원은 공모사업 추진 관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그 외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관련 사업 중 여성가족부와 민간단체가 사업시행주체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표 3-11〉 참조). 각 정책별 세부 예산 및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해당 정책들의 수행에 있어 관련되는 민간단체(여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여성가족부 연도별 민간단체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결산	2018 예산	2019 예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361	419	399
양성평등문화 확산	549	656	583
미래 여성인재 양성	1,192	1,207	1,207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4,087	4,482	2,78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	740	1,66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400	3,920	3,940
가정폭력·성폭력 재방방지사업	2,911	3,222	1,477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3,567	3,845	5,180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	-	1,131
성폭력 피해자 지원	28,969	27,018	31,345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361	419	399
양성평등문화 확산	549	656	583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수와 지원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지원 사업 수는 293개에서 2018년 218개로 75개 감소하였으며, 지원금액도 2012년 14,770백만 원에서 2018년 7,008백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표 3-12〉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현황(2012년~2018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형 수	7	5	6	6	6	9	9
지원 사업 수	293	289	293	232	225	200	218
지원금액	14,770	14,480	13,269	9,000	9,000	6,400	7,008

자료: 김복태 외(2018),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현황분석 및 활성화 지원방안」에서 재인용

3)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정책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정책은 크게 ‘여성 공동워크숍’,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 ‘사회단체지원’, ‘여성단체 지도력 향상’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3-12〉 참조).

2019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산 절감으로 인해 4가지 정책 중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짙은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2018년까지는 4가지의 지원정책을 매해 지원해오고 있었다. 첫 번째, ‘여성 공동워크숍’은 여성단체·시설·NGO 회장 및 회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단체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로 시정시책 및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8조(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추진근거를 가진다. 세부적으로, 수원시의회의원과 여성단체·시설·NGO 여성리더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및 리더십 배양으로 수원시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그리고 친교와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한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여성의 재해석을 통해 워킹맘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전환의 계기마련, 지친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시민참가공연 그리고 유관기관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기타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볼거리와 참여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사회단체지원’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통해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가 지원받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지원 간 사업목적으로는 기술과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와 경제적 활동의 제한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술과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와 경제적 활동

의 제안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가정관리사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기존의 가정관리사 교육 수료생들에게 수납 및 정리교육을 통해 정리전문가로서의 재도약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는 강사료, 홍보비, 교재인쇄비, 간식비, 교육진행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여성단체 지도력 향상’은 매년 공모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된 여성단체의 행사 및 사업을 보조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역량강화 및 사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수원화성문화제기념 꽃예술전이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및 활성화, 저탄소 녹색환경 계몽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취·창업 교육사업 등으로 꽃문화예술 의식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및 교양지원 사업, 정서순화, 심미적 치료효과, 봉사의식 고취 등을 세부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4)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예산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예산은 수원시 본예산과 기금 등 2곳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본예산은 여성정책과의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예산으로 크게 ‘여성 공동 워크숍’,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 ‘사회단체지원’, ‘여성단체 지도력 향상’ 등 4가지 세부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을 기준으로 매년 여성단체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155,308천원에서 2019년 28,180천원으로 -81.9%의 큰 감소를 보이며, ‘여성 공동워크숍’과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는 일회성 행사로 인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3-13〉 참조).

〈표 3-13〉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예산(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여성정책과)	155,308	125,000	110,800	106,900	28,180
여성 공동워크숍	-	10,000	12,800	13,200	-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	100,000	90,000	73,000	66,000	-
사회단체지원	53,308	18,000	18,000	20,700	21,180
여성단체 지도력 향상	2,000	7,000	7,000	7,000	7,000

자료: 수원시(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하지만 ‘여성 공동워크숍’은 2019년에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자체 비용(15,000천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시가 아닌 기관을 통해 사업이 지원될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2019년에는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단체 관련 모든 정책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표 3-14〉 수원시 여성단체 관련 정책(2015년~2019년)

(단위 : 개수, 지원여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여성정책과)	3	4	4	4	3
여성 공동워크숍	X	0	0	0	0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여성문화축제)	0	0	0	0	X
사회단체지원	0	0	0	0	0
여성단체 지도력 향상	0	0	0	0	0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수원시 각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총사업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 양성평등기금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정폭력방지법’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00백만원을 공모를 통해 배분하고 있다(〈표 3-15〉 참조).

〈표 3-15〉 수원시 연도별 양성평등기금(2015년~2019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원시 기금 총액(연도별 조성액)	66,202	82,012	94,517	106,784	123,370
양성평등기금	5,154	5,001	4,851	4,812	4,693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총사업비	180	245	250	150	200

주: 2015년은 양성평등기금이 아닌 여성발전기금

자료: 수원시(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양성평등기금 신청 사업은 평균 26.40개이며, 이 중 지원되는 사업은 평균 20.40개, 제외되는 사업은 평균 6개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초과된 경우는 2017년 한 해 밖에 없으며, 대체적으로 총 사업비 보다 사업비가 적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참조).

〈표 3-16〉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신청사업 및 예산(2015년~2019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사업	지원 사업 (제외사업)	수원시여성단체 지원 사업(%)	기금지원액	지원예산	비고
2015	25	23(2)	7(30.4)	167,600	180,000	
2016	28	22(6)	7(31.8)	232,236	245,000	
2017	29	21(8)	8(38.1)	252,861	250,000	△ 2,861
2018	25	17(8)	5(29.4)	149,625	150,000	
2019	25	19(6)	3(15.8)	188,362	200,000	

주: 2015년은 양성평등기금이 아닌 여성발전기금

자료: 수원시(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유형별 분류를 보면 4년 동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이 30개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21개),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16개),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지원’(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 등 가족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표 3-17〉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유형별 분류(2016년~2019년)

연도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기타	계
2016	6	2	9	4	1	22
2017	7	2	9	3	-	21
2018	5	5	5	2	-	17
2019	3	7	7	2	-	19
총계	21	16	30	11	1	79

주1: 2015년은 양성평등기금이 아닌 여성발전기금

주2: 사업유형분류기준, 이영안(2017)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자료: 수원시(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2015년과 2016년 7개 단체, 2017년 8개 단체, 2018년 5개 단체, 2019년 4개 단체 등의 사업선정 현황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선정기관명, 사업명, 지원액 및 자부담액은 <표 3-18>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수원시 여성단체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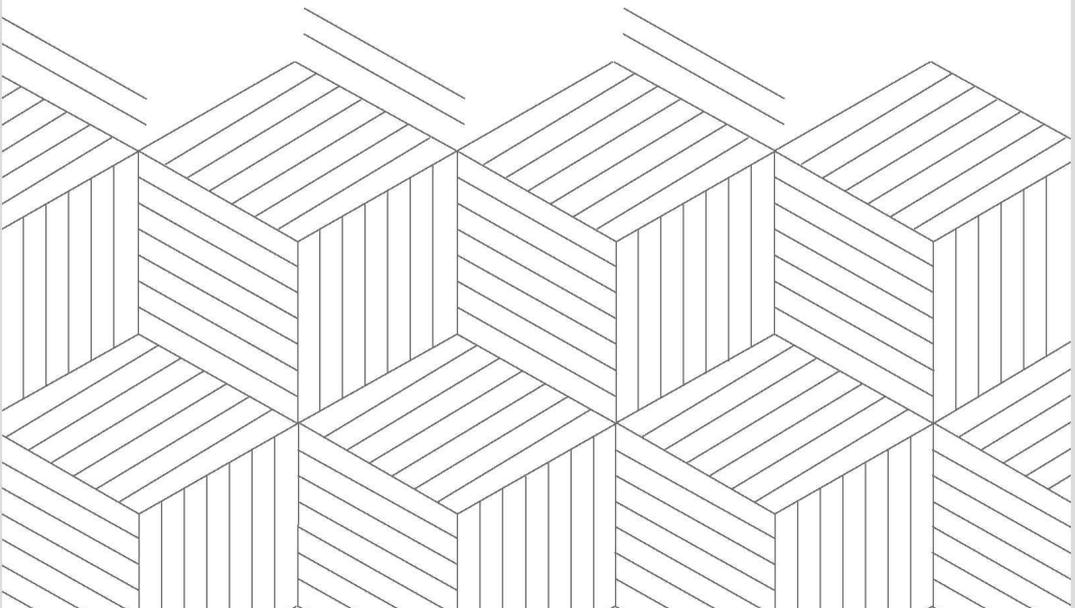
구분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2015	수원YWCA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700	6,290
	수원YWCA	동화구연교육 "우리할머니는 이야기꾼"	359	3,593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문가정보육사 양성프로그램	660	5,960
	수원여성회	성인지 미디어 강사단 양성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캠프	2,079	9,358
	수원탁틴내일	"알아가는 성, 깨닫는 성"	1,000	8,980
	사)경기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행복한 그녀 수원여성" 소식지 발간	300	6,400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여성소비자 상담사 양성 교육	840	7,620
2016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가정에서 난 평등하고 싶다	387	17,000
	수원 YWCA	성인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Human Plus	1,965	7,900
	사)수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떠나는 역사 문화 기행	6,010	11,000
	수원여성회	강사단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1,562	6,270
	수원탁틴내일	두드림 바로알자 "성폭력"	2,480	19,740
	사)수원여성 노동자회	여성,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 프로그램	810	5,920
	사)수원여성의전화	수원시민을 위한 올래길	1,500	14,900
2017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수원시 양성평등축제	2,000	12,000
	사)수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떠나는 역사문화 기행	6,800	16,040
	사)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프로그램	1,000	8,940
	가족사랑교육원	양성평등을 위한 도형심리와 자연친화 체험지도	1,200	10,540

구분	기관명	사업명	계	
			자부담	지원액
	수원YWCA	활동을 통한 성인지 스토리	1,200	10,000
	수원여성의 전화	성평등을 위한 제3자 캠퍼스 프로젝트 -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1,204	19,908
	수원여성회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나답게 살아가기"	2,120	17,680
	수원탁틴내일	두드림 바로알자 "성폭력"	2,480	19,950
2018	사)수원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과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4,300	14,300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나의 양성평등지수는?	1,000	11,000
	수원여성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성평등 의회	1,910	11,450
	사)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프로그램	1,100	10,770
	수원YWCA	배려의 ICON 성평등 감수성	1,450	11,450
2019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멋진 너! 멋진 나! 나쁜표현 No, No, No	1,615	11,960
	수원일하는 여성회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공동체 '수원마더센터' 프로젝트	1,200	10,862
	사)수원여성노동자회	성평등노동, 상상하고 변화하고 행동하자!	1,250	11,340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기존통념을 털어라 양성평등!	1,000	8,940

자료: 수원시(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별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제4장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에 대한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제4장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에 대한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는 수원시 여성단체 전반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단체 운영의 애로사항 도출 그리고 정책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더불어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역량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여성단체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재정 현황 및 역량’,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등 설문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 각 영역별 기본 현황은 응답자를 통해 직접 기입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식 응답으로 역량강화 여부, 역량강화 지원의 충분성 및 필요성, 영역별 문제의 심각성, 지원체계의 중요성 등 그동안 수원시 여성단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며 인식할 수 있다.

역량실태조사 분석결과와 향후 작성될 정책 제언들을 통해 수원시 여성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성단체, 수원시, 수원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과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수원시민의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수원시 여성단체에 대한 첫 번째 연구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수원시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가 모든 참여자(여성단체, 연구기관, 수원시, 수원시민)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될 것이다.

2) 조사설계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개요는 <표 4-1>과 같다. 모집단은 수원시에 위치한 여성단체 대표 및 상근활동가로 표본크기는 39명이다. 조사 방법은 사전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와 일정을 조율하여 직접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1개월 간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표본은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6기관 중 7기관의 임원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에서는 7기관 대표 및 상근활동가 32명이 참여하였다.

<표 4-1> 조사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수원시 내 여성단체
표본크기	• 39명(유효표본기준)
표본배분	•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16기관 중 7기관의 임원 7명 참여 •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 7기관 중 7기관의 대표 및 상근활동가 32명 참여
표본추출틀	• 직접방문조사
표본오차	• $\pm 2.5\%$ (신뢰수준 95%)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응답자 특성’,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재정 현황 및 역량’,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활용하여 수원시 여성단체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사영역별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내용

구분	내용 ⁶⁾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책, 총 기관 근무 기간, 업무관련 총 경력 기간 등 6개 문항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여성단체(여성NGO)라고 생각하는 이유, 주요 활동범위, 설립연도, 단체등록, 단체유형, 주요 활동분야, 양성평등 실현 활동 여부, 주요 활동방식, 활동방식 정도, 주요 활동대상, 양성평등 실현이 미치는 영향 정도, 소속 단체에 대한 인식
재정 현황 및 역량	연간 예산 규모, 예산 확보 현황, 예산 지출 비중, 정부 지원 사업 신청·참여 여부,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소속 단체의 재정적 역량, 소속 단체의 재정관련 문제점, 여성단체(여성NGO)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중요도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소속 단체의 상근활동가, 상근활동가 연령별 분포, 상근활동가 근무여건, 소속 단체 회원 현황, 소속 단체 회비 납부 현황, 교육 훈련 제공 여부, 인적자원역량강화의 중요도, 소속 단체의 역량개발 지원 정도, 소속 단체의 인적자원역량 현황, 소속 단체의 인적자원 관리 문제점, 여성단체(여성NGO)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중요도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정책과정 참여의 중요성, 소속 단체의 정책과정 참여여부·역할 수행 정도, 소속 단체의 세부정책과정 참여여부·역할 수행 정도, 소속 단체 정책 역량, 정책참여 및 역량 관련 문제점 심각성, 여성단체(여성NGO)의 지속적인 정책 과정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 중요도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협력의 필요성,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형성(연대활동) 및 유지 정도, 협력유형, 단체별 협력 여부, 거버넌스(네트워크)역량,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심각성, 여성단체(여성NGO)의 거버넌스(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중요도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세부문항에 대한 수원시 여성단체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여 응답자별 설문내용의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기본 질의응답과 5점 척도로 질의한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7점 척도로 질의한 문항은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영역별 현황 및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며,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분석 기법 및 응답자 특성은 〈표 4-3〉과 같다.

6) 설문지 구성 및 내용별 세부문항은 본 연구보고서 뒷장에 부록 1.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 4-3〉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분석기법 및 응답자 특성

구분		분석방법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SPSS 25.0	
구분		표본 수	비율
성별	여성	39	100.0
	남성	0	0.0
연령대	20대	4	10.8
	30대	10	27.0
	40대	11	29.8
	50대	5	13.5
	60대	7	18.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5.7
	전문대 졸업	5	14.3
	대학교 졸업(학사)	23	54.7
	대학교 졸업(석사)	5	14.3
직책	상근활동가	29	85.3
	대표	5	14.7
근무기간	1년~3년 이하	14	43.8
	4년~6년 이하	7	22.0
	7년~10년 이하	5	15.7
	10년 이상	6	18.8
업무경력	1년~3년 이하	9	29.9
	4년~6년 이하	9	30.0
	7년~10년 이하	4	13.3
	10년 이상	8	26.6

제2절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조직특성 및 활동현황

1) 소속 단체가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라고 생각하는 이유

소속된 단체가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표 4-4>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1순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22.5%(9명), 2순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34.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1순위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57.1%(4명), 2순위 '회원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므로'·'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28.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1순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27.3%(9명), 2순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35.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귀 단체가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전체 1순위		협의회 1순위		네트워크 1순위	
	명	%	명	%	명	%
① 회원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4	10.0	0	0.0	4	12.1
②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4	10.0	4	57.1	0	0.0
③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므로	6	15.0	2	28.6	4	12.1
④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9	22.5	0	0.0	9	27.3
⑤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므로	8	20.0	0	0.0	8	24.2
⑥ 젠더관련 이슈를 다루므로	4	10.0	0	0.0	4	12.1
⑦ 아동, 청소년, 가족 관련 사업활동을 하므로	5	12.5	1	14.3	4	12.1
구분	전체 2순위		협의회 2순위		네트워크 2순위	
	명	%	명	%	명	%
① 회원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2	5.3	2	28.6	0	0.0
②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7	18.4	0	0.0	7	22.6
③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므로	5	13.2	2	28.6	3	9.7
④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13	34.2	2	28.6	11	35.5
⑤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므로	6	15.8	1	14.3	5	16.1
⑥ 젠더관련 이슈를 다루므로	2	5.3	0	0.0	2	6.5
⑦ 아동, 청소년, 가족 관련 사업활동을 하므로	3	7.9	0	0.0	3	9.7

2) 소속 단체의 주요 활동범위

소속된 단체의 주요 활동범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자치구단위의 활동범위가 90.0%(3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역단위가 10.0%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자치구단위 85.9%(6명), 광역단위 14.3%(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도 자치구단위 90.9%(30명), 광역단위 9.1%(3명) 순으로 유사한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귀 단체의 주요 활동범위는 어느 단위에 해당됩니까?

구분	전체		중앙단위		광역단위		자치구단위		읍·면·동단위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40	100.0	0	0.0	4	10.0	36	90.0	0	0.0
협의회	7	100.0	0	0.0	1	14.3	6	85.7	0	0.0
네트워크	33	100.0	0	0.0	3	9.1	30	90.9	0	0.0

3) 소속 단체의 설립연도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의 단체별 설립연도는 다음 <표 4-6>과 같다. 설립연도순으로 보면 수원YWCA가 1969년으로 제일 먼저 설립되었으며,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1984년, 수원여성회 1989년, 수원여성의전화 1994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1995년, 수원일하는여성회 2002년, 수원여성노동자회 2003년, 수원가족지원센터 2006년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의 설립연도는 1984년이다.

<표 4-6> 귀 단체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구분	설립연도	구분	설립연도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1984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1995년
수원YWCA	1969년	수원일하는여성회	2002년
수원여성회	1989년	수원여성노동자회	2003년
수원여성의전화	1994년	수원가족지원센터	2006년

4) 소속 단체의 등록단위

소속된 단체의 등록단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에 71.8%(28명)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수원시)가 25.6%(10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 85.7%(6명), 기초자치단체(수원시) 14.3%(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도 광역자치단체(경기도) 68.8%(22명), 기초자치단체(수원시) 28.1%(9명) 순으로 유사한 등록단위를 보였다.

<표 4-7> 귀 단체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구분	전체		중앙단위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기초자치단체(수원시)		미등록단체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39	100.0	1	2.6	28	71.8	10	25.6	0	0.0
협의회	7	100.0	0	0.0	6	85.7	1	14.3	0	0.0
네트워크	32	100.0	1	3.1	22	68.8	9	28.1	0	0.0

5) 소속 단체의 유형

소속된 단체의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회원단체가 64.1%(25명)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부 또는 지회가 33.3%(13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부 또는 지회가 100.0%(7명)였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회원단체 78.1%(25명), 지부 또는 지회 18.8%(6명)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었다.

<표 4-8> 귀 단체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십니까?

구분	전체		중앙본부		지부 또는 지회		회원단체		독자적 단체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39	100.0	0	0.00	13	33.3	25	64.1	1	2.6
협의회	7	100.0	0	0.00	7	100.0	0	0.00	0	0
네트워크	32	100.0	0	0.00	6	18.8	25	78.1	1	3.1

6) 소속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주로 활동하는 분야

소속된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다음 <표 4-9>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20.3%(25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 18.7%(23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기타 활동 31.3%(5명), 양성평등문화 확산 25.0%(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19.6%(21명),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18.7%(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여성단체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기타 활동을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인권보호활동도 주요 활동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특정 활동에 집중되지 않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9>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복수응답)

구분	전체		성 주류화 조치 참여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 세력화		여성 대표성 강화	
	명	%	명	%	명	%	명	%
총계	123	100.0	19	15.4	19	15.4	20	16.3
협의회	16	100.0	0	0.0	2	12.5	2	12.5
네트워크	107	100.0	19	17.8	17	15.9	18	16.8
구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타			
	명	%	명	%	명	%		
총계	23	18.7	25	20.3	17	13.8		
협의회	3	18.8	4	25.0	5	31.3		
네트워크	20	18.7	21	19.6	12	11.2		

7) 소속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분야별 활동성 정도

소속된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분야별 활동성 정도는 다음 <표 4-10>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해 '매우 활발하다' 47.5%(19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활발한 편이다' 응답률을 보인 활동은 성주류화 조치 참여 43.6%(17명),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세력화 38.5%(15명) 여성 대표성 강화 59.0%(23명),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57.9%(22명), 기타 45.0%(9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활발한 편이다’ 응답에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세력화(50.0%, 3명), 여성 대표성 강화(57.1%, 4명),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66.7%, 4명), 양성평등문화 확산(42.9%, 3명), 기타(50.0%, 1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매우 활발하다’ 응답에 양성평등문화 확산(48.5%, 16명), ‘활발한 편이다’ 응답에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세력화(36.4%, 12명), 여성 대표성 강화(59.4% 19명),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56.3%, 18명), 기타(44.4%, 8명)로 나타났다.

〈표 4-10〉 귀하가 속한 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분야별로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① 성주류화 조치 참여	전체	1(2.6)	5(12.8)	9(23.1)	17(43.6)	7(17.9)
	협의회	0(0.0)	0(0.0)	5(83.3)	1(16.7)	0(0.0)
	네트워크	1(3.0)	5(15.2)	4(12.1)	16(48.5)	7(21.2)
② 경제활동 참여 및 경제세력화	전체	2(5.1)	3(7.7)	14(35.9)	15(38.5)	5(12.8)
	협의회	0(0.0)	1(16.7)	2(33.3)	3(50.0)	0(0.0)
	네트워크	2(6.1)	2(6.1)	12(36.4)	12(36.4)	5(15.2)
③ 여성 대표성 강화	전체	0(0.0)	2(5.1)	9(23.1)	23(59.0)	5(12.8)
	협의회	0(0.0)	1(14.3)	1(14.3)	4(57.1)	1(14.1)
	네트워크	0(0.0)	1(3.1)	8(25.0)	19(59.4)	4(12.5)
④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전체	0(0.0)	0(0.0)	9(23.7)	22(57.9)	7(18.4)
	협의회	0(0.0)	0(0.0)	2(33.3)	4(66.7)	0(0.0)
	네트워크	0(0.0)	0(0.0)	7(21.9)	18(56.3)	7(21.9)
⑤ 양성평등문화 확산	전체	1(2.5)	0(0.0)	4(10.0)	16(40.0)	19(47.5)
	협의회	1(14.3)	0(0.0)	0(0.0)	3(42.9)	3(42.3)
	네트워크	0(0.0)	0(0.0)	4(12.1)	13(39.4)	16(48.5)
⑥ 기타	전체	1(5.0)	1(5.0)	5(25.0)	9(45.0)	4(20.0)
	협의회	1(50.0)	0(0.0)	0(0.0)	1(50.0)	0(0.0)
	네트워크	0(0.0)	1(5.6)	5(27.8)	8(44.4)	4(22.2)

8) 소속 단체의 주된 활동방식

소속된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서비스 생산이 34.7%(25명)로 가장 주된 활동방식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창활동 33.3%(24명), 대안사회운동 31.9%(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서비스생산 42.9%(6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주창활동 34.5%(20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그 외 서비스 생산 32.8%(19명), 대안사회운동 32.8%(19명)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구분	전체		주창활동		서비스생산		대안사회운동	
	명	%	명	%	명	%	명	%
총계	72	100.0	24	33.3	25	34.7	23	31.9
협의회	14	100.0	4	28.6	6	42.9	4	28.6
네트워크	58	100.0	20	34.5	19	32.8	19	32.8

9) 소속 단체의 활동방식에 따른 활동성 정도

소속된 단체의 활동방식에 따른 활동성 정도는 다음 <표 4-12>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주창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43.6%(17명), 서비스생산은 '그저 그렇다' 37.5%(15명), 대안사회운동은 '활발한 편이다' 55.0%(22명)로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주창활동은 '그저 그렇다' 71.4%(5명), 서비스생산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그저 그렇다' 28.6%(2명), 대안사회운동 '활발한 편이다' 57.1%(4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주창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46.9%(15명), 서비스생산은 '그저 그렇다' 39.4%(13명), 대안사회운동은 '활발한 편이다' 54.5%(18명)로 나타났다.

<표 4-12> 귀하가 속한 단체는 활동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① 주창활동	전체	0(0.0)	1(2.6)	14(35.9)	17(43.6)	7(17.9)
	협의회	0(0.0)	0(0.0)	5(71.4)	2(28.6)	0(0.0)
	네트워크	0(0.0)	1(3.1)	9(28.1)	15(46.9)	7(21.9)
② 서비스생산	전체	2(5.0)	4(10.0)	15(37.5)	9(22.5)	10(25.0)
	협의회	1(14.3)	2(28.6)	2(28.6)	1(14.3)	1(14.3)
	네트워크	1(3.0)	2(6.1)	13(39.4)	8(24.2)	9(27.3)
③ 대안사회운동	전체	0(0.0)	1(2.5)	13(32.5)	22(55.0)	4(10.0)
	협의회	0(0.0)	1(14.3)	1(14.3)	4(57.1)	1(14.3)
	네트워크	0(0.0)	0(0.0)	12(36.4)	18(54.5)	3(9.1)

10) 소속 단체의 주요 활동대상

소속된 단체의 주요 활동대상은 다음 <표 4-13>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일하는 여성·마을(지역)여성·경력단절 여성이 26.8%(26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 등이 22.7%(22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범죄 피해자 37.5%(6명), 노인·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 등 31.3%(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일하는 여성·마을(지역)여성·경력단절 여성 27.2%(22명), 유아·청소년 24.7%(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귀 단체의 주요한 활동대상은 누구입니까?(복수응답)

구분	전체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범죄 피해자		일하는 여성, 마을(지역)여성, 경력단절 여성	
	명	%	명	%	명	%
총계	97	100.0	20	20.6	26	26.8
협의회	16	100.0	6	37.5	4	25.0
네트워크	81	100.0	14	17.3	22	27.2
구분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유아, 청소년	
	명	%	명	%	명	%
총계	8	8.2	22	22.7	21	21.6
협의회	0	0.0	5	31.3	1	6.3
네트워크	8	9.9	17	21.0	20	24.7

11) 소속 단체의 주요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성 정도

소속된 단체의 주요 활동대상에 따른 활동성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범죄 피해자에 대한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27.5%(11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활발한 편이다’ 응답률이 높은 활동대상은 일하는 여성·마을(지역)여성·경력단절 여성(46.2%, 18명), 노인·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48.7%, 19명), 유아·청소년(35.0%, 14명), 기타(72.7%, 8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활발하다’ 응답에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범죄 피해자(42.9%, 3명), ‘활발한 편이다’ 응답에 일하는 여성·마을(지역)여성·경력단절 여성(71.4%, 5명), 노인·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71.4%, 5명), 유아·청소년(57.1%, 4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매우 활발하다’ 응답에 유아·청소년(30.3%, 10명), ‘활발한 편이다’ 응답에 일하는 여성·마을(지역)여성·경력단절 여성(40.6%, 13명), 노인·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43.8%, 14명), 유아·청소년(30.3%, 10명), 기타(72.7%, 8명)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귀하가 속한 단체는 주요 활동대상에 따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①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 /범죄 피해자	전체	2(5.0)	7(17.5)	10(25.0)	10(25.0)	11(27.5)
	협의회	1(14.3)	0(0.0)	0(0.0)	3(42.9)	3(42.9)
	네트워크	1(3.0)	7(21.2)	10(30.3)	7(21.2)	8(24.2)
② 일하는 여성, 마을(지역)여성, 경력단절 여성	전체	0(0.0)	0(0.0)	12(30.8)	18(46.2)	9(23.1)
	협의회	0(0.0)	0(0.0)	2(28.6)	5(71.4)	0(0.0)
	네트워크	0(0.0)	0(0.0)	10(31.3)	13(40.6)	9(28.1)
③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전체	6(15.4)	8(20.5)	13(33.3)	8(20.5)	4(10.3)
	협의회	1(14.3)	0(0.0)	5(71.4)	1(14.3)	0(0.0)
	네트워크	5(15.6)	8(25.0)	8(25.0)	7(21.9)	4(12.5)
④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전체	1(2.6)	6(15.4)	7(17.9)	19(48.7)	6(15.4)
	협의회	0(0.0)	1(14.3)	1(14.3)	5(71.4)	0(0.0)
	네트워크	1(3.1)	5(15.6)	6(18.8)	14(43.8)	6(18.8)
⑤ 유아, 청소년	전체	2(5.0)	4(10.0)	10(25.0)	14(35.0)	10(25.0)
	협의회	1(14.3)	1(14.3)	1(14.3)	4(57.1)	0(0.0)
	네트워크	1(3.0)	3(9.1)	9(27.3)	10(30.3)	10(30.3)
⑥ 기타	전체	0(0.0)	0(0.0)	3(27.3)	8(72.7)	0(0.0)
	협의회	0(0.0)	0(0.0)	0(0.0)	0(0.0)	0(0.0)
	네트워크	0(0.0)	0(0.0)	3(27.3)	8(72.7)	0(0.0)

12) 소속 단체의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소속된 단체의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다음 <표 4-15>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든 세부분항에 대해 기여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기여하는 편이다’ 응답률이 높은 활동은 여성의 정치세력화 52.5%(21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55.0%(22명), 성주류화 실행력 강화 48.7%(19명),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60.0%(24명), 여성의 인권 신장 70.0%(28명),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 72.5%(29명), 젠더 이슈의 의제화 촉진 45.0%(18명), 지자체-여성단체 및 NGO 거버넌스 활성화 57.5%(23명), 양성평등 의식 확산 57.5%(23명), 양성평등 시민문화 조성 52.5%(21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기여하는 편이다’ 응답에 여성의 정치세력화(42.9%, 3명),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71.4%, 5명), 성주류화 실행력 강화(50.0%, 3명),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71.4%, 5명), 여성의 인권 신장(85.7%, 6명),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71.4%, 5명), 지자체-여성단체 및 NGO 거버넌스 활성화(57.1%, 4명), 양성평등 의식 확산(57.1%, 4명), 양성평등 시민문화 조성(57.1%, 4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기여하는 편이다’ 응답에 여성의 정치세력화(54.59%, 18명),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51.5%, 17명), 성주류화 실행력 강화(48.5%, 16명),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57.6%, 19명), 여성의 인권 신장(66.7%, 22명),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72.7%, 24명), 젠더이슈의 의제화 촉진(54.5%, 18명), 지자체-여성단체 및 NGO 거버넌스 활성화(57.6%, 19명), 양성평등 의식 확산(57.6%, 19명), 양성평등 시민문화 조성(51.5%, 17명) 등 모든 세부분항에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귀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기여한다
① 여성의 정치세력화	전체	2(5.0)	3(7.5)	9(22.5)	21(52.5)	5(12.5)
	협의회	0(0.0)	1(14.3)	2(28.6)	3(42.9)	1(14.3)
	네트워킹	2(6.1)	2(6.1)	7(21.2)	18(54.5)	4(12.1)
②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전체	0(0.0)	2(5.0)	8(20.0)	22(55.0)	8(20.0)
	협의회	0(0.0)	1(14.3)	1(14.3)	5(71.4)	0(0.0)
	네트워킹	0(0.0)	1(3.0)	7(21.2)	17(51.5)	8(24.2)
③ 성주류화 실행력 강화	전체	0(0.0)	0(0.0)	13(33.3)	19(48.7)	7(17.9)
	협의회	0(0.0)	0(0.0)	2(33.3)	3(50.0)	1(16.7)
	네트워킹	0(0.0)	0(0.0)	11(33.3)	16(48.5)	6(18.2)
④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전체	0(0.0)	0(0.0)	7(17.5)	24(60.0)	9(22.5)
	협의회	0(0.0)	0(0.0)	2(28.6)	5(71.4)	0(0.0)
	네트워킹	0(0.0)	0(0.0)	5(15.2)	19(57.6)	9(27.3)
⑤ 여성의 인권 신장	전체	0(0.0)	1(2.5)	1(2.5)	28(70.0)	10(25.0)
	협의회	0(0.0)	1(13.3)	0(0.0)	6(85.7)	0(0.0)
	네트워킹	0(0.0)	0(0.0)	1(3.0)	22(66.7)	10(30.3)
⑥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	전체	0(0.0)	1(2.5)	1(2.5)	29(72.5)	9(22.5)
	협의회	0(0.0)	1(14.3)	1(14.3)	5(71.4)	0(0.0)
	네트워킹	0(0.0)	0(0.0)	0(0.0)	24(72.7)	9(27.3)
⑦ 젠더이슈의 의제화 촉진	전체	0(0.0)	0(0.0)	13(32.5)	18(45.0)	9(22.5)
	협의회	0(0.0)	0(0.0)	7(100.0)	0(0.0)	0(0.0)
	네트워킹	0(0.0)	0(0.0)	6(18.2)	18(54.5)	9(27.3)
⑧ 지자체-여성단체 및 NGO 거버넌스 활성화	전체	0(0.0)	1(2.5)	6(15.0)	23(57.5)	10(25.0)
	협의회	0(0.0)	1(14.3)	2(28.6)	4(57.1)	0(0.0)
	네트워킹	0(0.0)	0(0.0)	4(12.1)	19(57.6)	10(30.3)
⑨ 양성평등 인식 확산	전체	0(0.0)	1(2.5)	1(2.5)	23(57.5)	15(37.5)
	협의회	0(0.0)	1(14.3)	1(14.3)	4(57.1)	1(14.3)
	네트워킹	0(0.0)	0(0.0)	0(0.0)	19(57.6)	14(42.4)
⑩ 양성평등 시민문화 조성	전체	0(0.0)	1(2.5)	2(5.0)	21(52.5)	16(40.0)
	협의회	0(0.0)	1(14.3)	1(14.3)	4(57.1)	1(14.3)
	네트워킹	0(0.0)	0(0.0)	1(3.0)	17(51.5)	15(45.5)

13) 소속 단체에 대한 인식

소속된 단체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 4-16>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소속된 단체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해 온 조직의 역사에 강한 자부심이 있다’ 60.0%(24명),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목표와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52.5%(21명),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42.5%(17명), ‘구성원들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율이 높다’ 37.5%(15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그렇다’ 응답에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해 온 조직의 역사에 강한 자부심이 있다’(71.4%, 5명),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목표와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57.1%, 4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매우 그렇다’ 응답에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해 온 조직의 역사에 강한 자부심이 있다’(57.6%, 19명),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목표와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51.5%, 17명),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45.5%, 15명), ‘구성원들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율이 높다’(39.4%, 1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6〉 다음은 귀하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해 온 조직의 역사에 강한 자부심이 있다.	전체	0(0.0)	0(0.0)	2(5.0)	14(35.0)	24(60.0)
	협의회	0(0.0)	0(0.0)	1(14.3)	1(14.3)	5(71.4)
	네트워크	0(0.0)	0(0.0)	1(3.0)	13(39.4)	19(57.6)
②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목표와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전체	0(0.0)	0(0.0)	4(10.0)	15(37.5)	21(52.5)
	협의회	0(0.0)	0(0.0)	2(28.6)	1(14.3)	4(57.1)
	네트워크	0(0.0)	0(0.0)	2(6.1)	14(42.4)	17(51.5)
③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전체	0(0.0)	0(0.0)	8(20.0)	15(37.5)	17(42.5)
	협의회	0(0.0)	0(0.0)	2(28.6)	3(42.9)	2(28.6)
	네트워크	0(0.0)	0(0.0)	6(18.2)	12(36.4)	15(45.5)
④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	전체	0(0.0)	0(0.0)	6(15.0)	20(50.0)	14(35.0)
	협의회	0(0.0)	0(0.0)	2(28.6)	5(71.4)	0(0.0)
	네트워크	0(0.0)	0(0.0)	4(12.1)	15(45.5)	14(42.4)
⑤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전체	0(0.0)	0(0.0)	10(25.0)	17(42.5)	13(32.5)
	협의회	0(0.0)	0(0.0)	5(71.4)	2(28.6)	0(0.0)
	네트워크	0(0.0)	0(0.0)	5(15.2)	15(45.5)	13(39.4)
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한다	전체	0(0.0)	4(10.0)	17(42.5)	12(30.0)	7(17.5)
	협의회	0(0.0)	1(14.3)	5(71.4)	1(14.3)	0(0.0)
	네트워크	0(0.0)	3(9.1)	12(36.4)	11(33.3)	7(21.2)
⑦ 경력개발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전체	0(0.0)	5(12.5)	20(50.0)	12(30.0)	3(7.5)
	협의회	0(0.0)	2(28.6)	3(42.9)	2(28.6)	0(0.0)
	네트워크	0(0.0)	3(9.1)	17(51.5)	10(30.3)	3(9.1)
⑧ 구성원들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율이 높다	전체	0(0.0)	1(2.5)	13(32.5)	11(27.5)	15(37.5)
	협의회	0(0.0)	0(0.0)	4(57.1)	1(14.3)	2(28.6)
	네트워크	0(0.0)	1(3.0)	9(27.3)	10(30.3)	13(39.4)

2. 재정 현황 및 역량

1) 소속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

소속된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는 다음 <표 4-17>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해마다 예산이 유동적이고 공식적인 예산규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예산규모별로 보면, 수원여성회가 126,083만원으로 가장 큰 예산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여성의전화 110,000만원, 수원YWCA 73,300만원,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18,339만원, 수원가족지원센터 10,929만원, 수원여성노동자회 9,000만원, 수원일하는여성회 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귀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2018년 기준, 프로젝트 사업비 포함)

예산규모			
단체명	연간 예산 규모	단체명	연간 예산 규모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	수원가족지원센터	10,929만원
수원YWCA	73,300만원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18,339만원
수원여성회	126,083만원	수원일하는여성회	5,000만원
수원여성노동자회	9,000만원	수원여성의전화	110,000만원

2) 소속 단체의 예산 확보 방법

소속된 단체의 예산 확보 방법은 다음 <표 4-18>과 같다. 내부수입이 외부수입보다 많은 단체는 수원여성의전화 100%(회비 30%, 자체수업 수익 70%), 수원일하는여성회 54%(회비 43%, 자체사업 수익 11%),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51%(회비 3%, 자체사업 수익 48%)로 나타났다.

반대로 외부수입이 많은 단체는 수원여성노동자회 85%(후원금 20%, 정부 지원금 50%, 민간단체 지원금 및 협찬 5%, 기타 10%), 수원가족지원센터 80.0%(후원금 30%, 정부 지원금 0.1%, 기타 49.9%), 수원여성회(후원금 37%, 정부 지원금 15%, 민간단체 지원금 및 협찬 2%, 기타 12%)·수원YWCA(후원금 3%, 정부 지원금 6%, 기타 57%) 66%로 나타났다.

〈표 4-18〉 귀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							
단체명	내부수입		외부수입				계
	회비	자체사업 수익	후원금	정부 지원금	민간단체 지원금 및 협찬	기타	
수원가족지원센터	20%	-	30%	0.1%	-	49.9%	100%
수원YWCA	32%	2%	3%	6%	-	57%	100%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3%	48%	15%	-	-	34%	100%
수원여성회	33%	1%	37%	15%	2%	12%	100%
수원일하는여성회	43%	11%	36%	10%	-	-	100%
수원여성노동자회	10%	5%	20%	50%	5%	10%	100%
수원여성의전화	30%	70%	-	-	-	-	100%

3) 소속 단체의 예산 지출 비중

소속된 단체의 예산 지출 비중은 다음 〈표 4-19〉와 같다. 예산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사무실 운영비가 가장 높은 단체는 수원시청소년성인권센터 19%였으며, 인건비 수원여성의전화 80%, 사업비 수원YWCA 54%, 기타 수원여성노동자회 16%로 단체별 차이를 보였다.

〈표 4-19〉 귀 단체의 예산 지출 비중은 어떠합니까?

예산 지출 비중					
단체명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계
수원가족지원센터	9%	38%	50%	3%	100%
수원YWCA	6%	35%	54%	5%	100%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19%	45%	30%	6%	100%
수원여성회	5%	48%	33%	14%	100%
수원일하는여성회	-	-	-	-	-
수원여성노동자회	4%	30%	50%	16%	100%
수원여성의전화	10%	80%	10%	-	100%

4) 소속 단체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혹은 참여여부

소속된 단체의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이나 참여여부는 다음 <표 4-20>과 같다. 본 질의문항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응답은 없었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에서만 응답을 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2019년에는 광역시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65.4%(17명), 시군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85.2%(23명)의 신청률을 보였으며, 신청한 지원 사업 중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60.0%(3명), 광역시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100.0%(17명)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지원 사업은 광역시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66.7%(16명), 시군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76.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20> 귀 단체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모두 응답) 2019년 지원 사업 신청 여부		(2019년 신청한 경우) 2019년 지원 사업 선정 여부		(모두 응답)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지원 사업 선정 여부	
	신청하지 않음	신청함	선정되지 않음	선정됨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① 중앙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22(88.0)	3(12.0)	4(57.1)	3(42.9)	13(76.5)	4(23.5)
②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20(80.0)	5(20.0)	2(40.0)	3(60.0)	11(61.1)	7(38.9)
③ 광역시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16(72.7)	6(27.3)	7(70.0)	3(30.0)	12(75.0)	4(25.0)
④ 광역시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9(34.6)	17(65.4)	-	17(100.0)	8(33.3)	16(66.7)
⑤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 원 사업	22(88.0)	3(12.0)	3(75.0)	1(25.0)	12(80.0)	3(20.0)
⑥ 시군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4(14.8)	23(85.2)	11(52.4)	10(47.6)	5(23.8)	16(76.2)

5)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은 다음 <표 4-21>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정산의 유연성 확보 및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7.00)가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양성평등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6.59), ‘정산의 유연성 확보 및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6.52),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예산액의 최대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6.50)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세부사항은 ‘정산의 유연성 확보 및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협의회 7.00/ 네트워크 6.52)로 나타났다.

<표 4-21> 귀 단체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1)	네트워크 (n=32)	협의회 (n=1)	네트워크 (n=32)
①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5.00	5.56	-	1.318
② 참여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이념,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	5.00	5.88	-	1.100
③ 단체 간 협력(연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5.00	5.19	-	.896
④ 신생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5.00	5.53	-	.761
⑤ 단기사업과 연속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다	5.00	5.66	-	1.382
⑥ 사업선정 대상 수 확대가 필요하다	5.00	5.81	-	1.281
⑦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4.00	5.44	-	1.585
⑧ 정산의 유연성 확보 및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	7.00	6.52	-	.811
⑨ 양성평등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5.00	6.59	-	.798
⑩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5.00	5.78	-	1.313
⑪ 사업선정 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필요하다	4.00	5.81	-	1.030
⑫ 예산사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00	6.41	-	.837
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예산액의 최대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	5.00	6.50	-	.762

6) 소속 단체의 재정적 역량

소속된 단체의 재정적 역량은 다음 <표 4-22>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그렇다’의 응답에 ‘대표와 이사는 단체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다’ 51.3%(20명),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다’ 46.2%(18명), ‘행정인력 중 재무원, 회계 관련 인력이 있다’ 35.9%(14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그렇다’ 응답에 ‘대표와 이사는 단체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다’(45.9%, 3명), ‘행정인력 중 재무원, 회계 관련 인력이 있다’(57.1%, 4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그렇다’ 응답에 ‘대표와 이사는 단체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다’(56.3%, 18명),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다’(43.8%, 14명), ‘행정인력 중 재무원, 회계 관련 인력이 있다’(37.5%, 12명), ‘회원 중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있다’(28.1%, 9명),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다’(34.4%, 11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22> 다음은 귀 단체의 재정적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대표와 이사는 단체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다	전체	0(0.0)	0(0.0)	3(7.7)	20(51.3)	16(41.0)
	협의회	0(0.0)	0(0.0)	2(28.6)	2(28.6)	3(42.9)
	네트워크	0(0.0)	0(0.0)	1(3.1)	18(56.3)	13(40.6)
②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	전체	0(0.0)	6(15.4)	12(30.8)	18(46.2)	3(7.7)
	협의회	0(0.0)	1(14.3)	1(14.3)	4(57.1)	1(14.3)
	네트워크	0(0.0)	5(15.6)	11(34.4)	14(43.8)	2(6.3)
③ 행정인력 중 재무원, 회계 관련 인력이 있다	전체	2(5.1)	9(23.1)	6(15.4)	14(35.9)	8(20.5)
	협의회	0(0.0)	0(0.0)	1(14.3)	2(28.6)	4(57.1)
	네트워크	2(6.3)	9(28.1)	5(15.6)	12(37.5)	4(12.5)
④ 회원 중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있다	전체	5(12.8)	13(33.3)	4(10.3)	10(25.6)	7(17.9)
	협의회	0(0.0)	5(71.4)	0(0.0)	1(14.3)	1(14.3)
	네트워크	5(15.6)	8(25.0)	4(12.5)	9(28.1)	6(18.8)
⑤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다	전체	1(2.6)	11(28.2)	13(33.3)	12(30.8)	2(5.1)
	협의회	0(0.0)	2(28.6)	3(42.9)	1(14.3)	1(14.3)
	네트워크	1(3.1)	9(28.1)	10(31.3)	11(34.4)	1(3.1)

7) 소속 단체의 재정관련 문제점의 심각성

소속된 단체의 재정관련 문제점의 심각성은 다음 <표 4-23>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인건비 총당의 어려움’(6.00), ‘재정확보의 어려움(회비에 국한)’(5.97), ‘홍보예산 부족’(5.71)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 항목 미포함’(6.32), ‘후원모금 제도와 활동기반의 한계’(5.81), ‘홍보예산 부족’(5.81), ‘재정확보의 어려움(회비의 국한)’(5.71)이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심각성이 부각된 문제점은 ‘재정확보의 어려움(회비에 국한)’(협의회 5.97/ 네트워크 5.71), ‘홍보예산 부족’(협의회 5.71 / 네트워크 5.81)으로 나타났다.

<표 4-23>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재정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7)	네트워크 (n=32)	협의회 (n=7)	네트워크 (n=32)
① 인건비 총당의 어려움	6.00	5.66	1.732	1.578
② 회원확대의 어려움	4.86	5.69	1.345	1.330
③ 후원모금 제도와 활동기반의 한계	3.86	5.81	1.952	1.030
④ 정부사업관련 행정절차의 복잡성	4.43	5.66	1.988	1.035
⑤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 항목 미포함	4.29	6.32	1.799	.945
⑥ 단체 사무국 공간 확보의 어려움	5.43	4.81	1.988	2.023
⑦ 재정확보의 어려움(회비에 국한)	5.97	5.71	1.307	1.604
⑧ 홍보예산 부족	5.71	5.81	1.604	1.120
⑨ 양성평등기금 등 정부공모사업의 접근성 제약	4.33	5.28	1.366	1.085

8)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재정 안정화(재정난 해결)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은 다음 <표 4-23>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자부담의 부담 없이 사업을 구상·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6.20),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확대’(6.17),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확대’(5.83) 순으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확대’(6.58), ‘자부담의 부담 없이 사업을 구상·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6.52),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확대’(6.30)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여성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중에서도 ‘자부담의 부담 없이 사업을 구상·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협의회 6.20/ 네트워크 6.52),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확대’(협의회 6.17 / 네트워크 6.58),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확대’(협의회 5.83/ 네트워크 6.30)를 중요하기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재정 안정화(재정난 해결)를 위해서는 다음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①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여성단체/NGO 재정컨설팅지원 강화	5.40	5.76	1.517	1.275
②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공공기금의 조성 및 확대	5.67	6.15	1.506	.906
③ 중앙/지방정부 지원(공간,활동가 경비, 인건비 등)의 확대	5.83	6.30	1.329	.728
④ 기부문화(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4.60	6.27	.548	.876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대	4.20	6.12	.447	1.023
⑥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확대	4.00	5.64	.000	1.220
⑦ 프로젝트 참여기회의 확대	4.80	6.12	1.095	.927
⑧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회원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5.80	6.15	.837	.972
⑨ 정부사업 참여시 단체의 재정 재량권 확대	5.80	6.03	1.643	1.045
⑩ 자부담의 부담 없이 사업을 구상·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6.20	6.52	1.095	.755
⑪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확대	6.17	6.58	1.329	.792

3.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1) 소속 단체의 상근활동가 수와 연령별 분포

소속된 단체의 상근활동가 수와 연령별 분포는 다음 <표 4-25>와 같다. 소속된 단체의 상근활동가는 모두 여성이며, 수원여성의전화(21명)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 20~30대 상근활동가는 수원여성의전화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는 수원일하는여성회 80%, 60대 이상은 수원가족지원센터·수원여성노동자회가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질문에서 상근활동가가 없어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표 4-25, 26, 27> 포함).

<표 4-25>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는 몇 명이며 연령별 분포를 기재해주세요.

단체명	상근활동가 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기타
수원가족지원센터	2명	-	50%	50%	-
수원YWCA	9명	45%	56%	-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3명	33%	67%	-	-
수원여성회	4명	50%	50%	-	-
수원일하는여성회	5명	20%	80%	-	-
수원여성노동자회	2명	50%	-	50%	-
수원여성의전화	21명	80%	20%	-	-

2) 소속 단체의 상근활동가의 근속기간과 근로여건

소속된 단체의 상근활동가의 근속기간과 근로여건은 다음 <표 4-26>과 같다. 상근활동가의 근속기간은 3년 미만에 수원여성의전화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5년도 수원여성의전화 3명, 5년~10년은 수원YWCA 3명, 10년 이상도 수원YWCA 4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수원시일하는여성회가 일부 미가입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단체에서는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수준은 최대 수원여성의전화 200만원, 최소 수원일하는여성회 5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여성회는 전일제 상근활동가와 시간제 상근활동가를 두고 있으며 시간제상근활동가는 9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대체로 8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가족지원센터만 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4-26>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 관련 질문에 대하여 주십시오.

단체명	근속기간				근로여건		
	3년 미만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4대 보험 가입여부	급여수준	근로시간 (1일 기준)
수원가족지원센터	-	1명	1명	-	가입	100만원	5시간
수원YWCA	1명	1명	3명	4명	가입	180만원	8시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1명	2명	-	-	가입	180만원	8~10시간
수원여성회	2명	1명	1명	-	가입	167만원 (반상근 95만원)	8시간
수원일하는여성회	1명	1명	2명	1명	일부 미·가입	50만원	8시간
수원여성노동자회	-	-	2명	-	가입	110만원	8시간
수원여성의전화	15명	3명	2명	1명	가입	200만원	8시간

3) 소속 단체의 회원 관련 사항

소속된 단체의 회원 관련 사항은 다음 <표 4-27>과 같다. 소속된 단체별 회원 수는 정보 취합이 어려운 단체는 제외하였으며, 수원여성의전화 352명, 수원일하는여성회 198명, 수원여성노동자회 106명으로 나타났다.

남성회원의 비율은 수원여성회가 26%로 가장 많았으며, 총회 참석비율은 수원여성노동자회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비납부 회원비율은 수원YWCA가 100%로 나타났으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40%)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령별 회비 납부 회원 비율을 살펴보면 20~30대에 수원일하는여성회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는 수원여성회 82%, 60대 이상은 수원YWCA 51%로 나타났다.

<표 4-27> 귀 단체의 회원 관련 질문에 대하여 주십시오.

단체명	회원 관련 사항			회비 납부 회원(연령별)			
	회원수	남성회원 비율	총회 참석비율	회비납부 회원비율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수원가족지원센터	-	20%	30%	90%	10%	40%	50%
수원YWCA	-	24%	5%	100%	8%	41%	51%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	15%	50%	40%	-	-	-
수원여성회	-	26%	40%	85%	14%	82%	4%
수원일하는여성회	198명	10%	52%	70%	30%	70%	-
수원여성노동자회	106명	2%	60%	88%	10%	75%	15%
수원여성의전화	352명	-	51%	-	-	-	-

4) 소속 단체의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여부

소속된 단체의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여부는 다음 <표 4-28>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회원활동 역량강화 88.2%(30명)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82.4%(28명),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75.0%(24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53.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회원활동 역량강화에 100.0%(2명)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회원활동 역량강화에 87.5%(28명)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73.3%(22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50.0%(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귀 단체의 경우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교육훈련 제공여부	
		제공하지 않음	제공함
①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전체	8(25.0)	24(75.0)
	협의회	0(0.0)	2(100.0)
	네트워크	8(26.7)	22(73.3)
②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전체	6(17.6)	28(82.4)
	협의회	2(100.0)	0(0.0)
	네트워크	4(12.5)	28(87.5)
③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체	15(46.9)	17(53.1)
	협의회	0(0.0)	2(100.0)
	네트워크	15(50.0)	15(50.0)
④ 회원활동 역량강화	전체	4(11.8)	30(88.2)
	협의회	0(0.0)	2(100.0)
	네트워크	4(12.5)	28(87.5)

5) 소속 단체의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방법

소속된 단체의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방법은 다음 <표 4-29>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을 ‘직장(단체) 밖에서 외부전문가(멘토)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 30.7%(23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28.3%, 17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35.3%, 18명), 회원활동 역량강화(31.6%, 12명)는 ‘단체 내 경력이 오래된 선임이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는 ‘직장(단체) 밖에서 외부전문가(멘토)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도 28.3%(17명)로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에 ‘단체 내’(50.0%, 2명) 및 ‘단체 밖’(50.0%, 2명) 모든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50.0%, 1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50.0%, 2명), 회원활동 역량강화(50.0%, 1명)는 ‘단체 내의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종사자 역량을 개발’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여성단체(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에는 ‘직장(단체) 밖에서 외부 전문가(멘토)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 50.0%(1명), 회원활동 역량강화에는 ‘단체 밖에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역량을 개발’도 50.0%(1명)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에 ‘직장(단체) 밖에서 외부 전문가(멘토)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이 31.0%(22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29.3%, 17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36.2%, 17명), 회원활동 역량강화(33.3%, 12명)는 ‘단체 내 경력이 오래된 선임이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9〉 제공하고 있다면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위 : 명, %)

구분		제공한다면, 제공하는 방법			
		단체 내		단체 밖	
		단체내의 자체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종사자 역량을 개발	경력이 오래된 선임이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	단체 밖에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역량을 개발	직장(단체) 밖에서 외부 전문가(멘토)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
①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전체	19(25.3)	17(22.7)	16(21.3)	23(30.7)
	협의회	1(25.0)	1(25.0)	1(25.0)	1(25.0)
	네트워크	18(25.4)	16(22.5)	15(21.1)	22(31.0)
②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전체	15(25.0)	17(28.3)	11(18.3)	17(28.3)
	협의회	1(50.0)	0(0.0)	0(0.0)	1(50.0)
	네트워크	14(24.1)	17(29.3)	11(19.0)	16(27.6)
③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체	17(33.3)	18(35.3)	7(13.7)	9(17.6)
	협의회	2(50.0)	1(25.0)	1(25.0)	0(0.0)
	네트워크	15(31.9)	17(36.2)	6(12.8)	9(19.1)
④ 회원활동 역량강화	전체	11(28.9)	12(31.6)	5(13.2)	10(26.3)
	협의회	1(50.0)	0(0.0)	1(50.0)	0(0.0)
	네트워크	10(27.8)	12(33.3)	4(11.1)	10(27.8)

6) 소속 단체의 주체별 역량강화의 중요성

소속된 단체의 주체별 역량강화의 중요성은 다음 <표 4-30>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주체별 역량강화 중요성에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이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71.8%(28명),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개발 84.6%(33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48.7%(19명), 회원활동 역량강화 66.7%(26명)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에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100.0%, 6명),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100.0%, 6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100.0%, 6명), 회원활동 역량강화(100.0%, 6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에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66.7%, 22명),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81.8%, 27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39.4%, 13명), 회원활동 역량강화(60.6%, 20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30> 귀 단체의 경우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전체	0(0.0)	0(0.0)	2(5.1)	9(23.1)	28(71.8)
	협의회	0(0.0)	0(0.0)	0(0.0)	0(0.0)	6(100.0)
	네트워크	0(0.0)	0(0.0)	2(6.1)	9(27.3)	22(66.7)
②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전체	0(0.0)	0(0.0)	2(5.1)	4(10.3)	33(84.6)
	협의회	0(0.0)	0(0.0)	0(0.0)	0(0.0)	6(100.0)
	네트워크	0(0.0)	0(0.0)	2(6.1)	4(12.1)	27(81.8)
③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체	0(0.0)	2(5.1)	8(20.5)	10(25.6)	19(48.7)
	협의회	0(0.0)	0(0.0)	0(0.0)	0(0.0)	6(100.0)
	네트워크	0(0.0)	2(6.1)	8(24.2)	10(30.3)	13(39.4)
④ 회원활동 역량강화	전체	0(0.0)	1(2.6)	4(10.3)	8(20.5)	26(66.7)
	협의회	0(0.0)	0(0.0)	0(0.0)	0(0.0)	6(100.0)
	네트워크	0(0.0)	1(3.0)	4(12.1)	8(24.2)	20(60.6)

7) 소속 단체의 주체별 역량개발의 충분하게 지원여부

소속된 단체가 주체별 역량개발을 충분하게 지원여부는 다음 <표 4-31>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주체별 역량강화 지원에 ‘보통이다’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36.0%(18명), 여성단체(여성NGO)상근활동가 역량강화 28.0%(14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32.0%(16명), 회원활동 역량강화 40.0%(20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보통이다’ 응답에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83.3%, 5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충분하다’ 응답에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39.4%, 13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39.4%, 13명), ‘보통이다’ 응답에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39.4%, 13명), 회원활동 역량강화(45.5%, 15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31> 귀 단체는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개발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전체	1(2.0)	7(14.0)	18(36.0)	12(24.0)	1(2.0)
	협의회	0(0.0)	1(16.7)	5(83.3)	0(0.0)	0(0.0)
	네트워크	1(3.0)	6(18.2)	13(39.4)	12(36.4)	1(3.0)
②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전체	1(2.0)	9(18.0)	14(28.0)	14(18.0)	1(2.0)
	협의회	0(0.0)	3(50.0)	2(33.3)	1(16.7)	0(0.0)
	네트워크	1(3.0)	6(18.2)	12(36.4)	13(39.4)	1(3.0)
③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체	2(4.0)	13(26.0)	16(32.0)	7(14.0)	1(2.0)
	협의회	0(0.0)	3(50.0)	2(33.3)	1(16.7)	0(0.0)
	네트워크	1(3.0)	6(18.2)	12(36.4)	13(39.4)	1(3.0)
④ 회원활동 역량강화	전체	1(2.0)	9(18.0)	20(40.0)	8(16.0)	1(2.0)
	협의회	0(0.0)	4(66.7)	1(16.7)	1(16.7)	0(0.0)
	네트워크	2(6.1)	9(27.3)	15(45.5)	6(18.2)	1(3.0)

8) 소속 단체의 인적자원역량

소속된 단체의 인적자원역량은 다음 <표 4-3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에 ‘상근활동가들은 여성주의 마인드를 적절히 가지고 있다’ 51.3%(20명), ‘현재 상근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53.8%(21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그렇다’ 응답에 ‘현재 회원구성원 규모는 적절하다’(50.0%, 3명), ‘현재 상근활동가 모집은 원활하다’(50.0%, 3명), ‘현재 상근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만족한다’(33.3%, 2명),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잘 지원하고 있다’(33.3%, 2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그렇다’ 응답에 ‘상근활동가들은 여성주의 마인드를 적절히 가지고 있다’(57.6%, 19명), ‘현재 상근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만족한다’(57.6%, 19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응답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상근활동가 인적구성은 적절하다’ 50.0%(3명),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현재 회원구성원 규모는 적절하다’ 45.5%(15명)로 인적자원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다음은 귀 단체의 인적자원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상근활동가 인적구성은 적절하다	전체	4(10.3)	11(28.2)	13(33.3)	10(25.6)	1(2.6)
	협의회	2(33.3)	3(50.0)	1(16.7)	0(0.0)	0(0.0)
	네트워크	2(6.1)	8(24.2)	12(36.4)	10(30.3)	1(3.0)
② 현재 회원구성원 규모는 적절하다	전체	5(12.8)	15(38.5)	12(30.8)	5(12.8)	2(5.1)
	협의회	0(0.0)	0(0.0)	1(16.7)	3(50.0)	2(33.3)
	네트워크	5(15.2)	15(45.5)	11(33.3)	2(6.1)	0(0.0)
③ 현재 상근활동가 모집은 원활하다	전체	5(12.8)	7(17.9)	18(46.2)	7(17.9)	2(5.1)
	협의회	0(0.0)	0(0.0)	1(16.7)	3(50.0)	2(33.3)
	네트워크	5(15.2)	7(21.2)	17(51.5)	4(12.1)	0(0.0)
④ 차세대(중간리더) 발굴 및 육성은 안정적이다	전체	4(10.3)	10(25.6)	23(59.0)	2(5.1)	0(0.0)
	협의회	0(0.0)	0(0.0)	6(100.0)	0(0.0)	0(0.0)
	네트워크	4(12.1)	10(30.3)	17(51.5)	2(6.1)	0(0.0)
⑤ 상근활동가들은 여성주의 마인드를 적절히 가지고 있다	전체	0(0.0)	0(0.0)	13(33.3)	20(51.3)	6(15.4)
	협의회	0(0.0)	0(0.0)	4(66.7)	1(16.7)	1(16.7)
	네트워크	0(0.0)	0(0.0)	9(27.3)	19(57.6)	5(15.2)
⑥ 현재 상근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전체	0(0.0)	3(7.7)	10(25.6)	21(53.8)	5(12.8)
	협의회	0(0.0)	1(16.7)	1(16.7)	2(33.3)	2(33.3)
	네트워크	0(0.0)	2(6.1)	9(27.3)	19(57.6)	3(9.1)
⑦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잘 지원하고 있다	전체	1(2.6)	6(15.4)	18(46.2)	11(28.2)	3(7.7)
	협의회	0(0.0)	1(16.7)	2(33.3)	2(33.3)	1(16.7)
	네트워크	1(3.0)	5(15.2)	16(48.5)	9(27.3)	2(6.1)

9) 소속 단체의 인적자원관리 관련 문제점의 심각성

소속된 단체의 인적자원관리 관련 문제점의 심각성은 다음 <표 4-33>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청년여성들의 참여 저조’(5.80), ‘인적자원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정부/지자체/기타)의 지원미비’(5.50), ‘인적자원관리 전담인력 부족’(5.40)을 인적자원관리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 인식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활동가들의 전문성 대비 낮은 보상’(5.61), ‘인적자원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정부/지자체/기타)의 지원미비’(5.48), ‘인적자원관리 전담인력 부족’(5.24)이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 관련 심각성이 부각된 세부문항은 ‘활동가들의 전문성 대비 낮은 보상’(협의회 5.50/ 네트워크 5.61), ‘인적자원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정부/지자체/기타)의 지원미비’(협의회 5.50 / 네트워크 5.48), ‘인적자원관리 전담인력 부족’(협의회 5.40/ 네트워크 5.24)로 나타났다.

<표 4-33>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① 활동가들의 전문성 부족	5.00	3.64	1.414	1.388
② 활동가들의 전문성 대비 낮은 보상	5.50	5.61	1.378	1.059
③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5.33	4.52	1.506	1.149
④ 여성운동의 이슈파악을 위한 교육 미비	5.17	4.30	1.722	1.447
⑤ 인력충원의 어려움	4.67	4.85	1.751	1.372
⑥ 활동가들의 중도포기	4.67	4.27	2.066	1.485
⑦ 지역 여성단체/소모임 네트워크 기회 부족	4.33	4.33	1.366	1.575
⑧ 인적자원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정부/지자체/기타)의 지원 미비	5.50	5.48	1.225	1.149
⑨ 인적자원관리 전담인력 부족	5.40	5.24	1.342	1.091
⑩ 청년여성들의 참여 저조	5.80	5.18	1.304	1.211

10)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은 다음 <표 4-34>와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6.17),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활동가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신규 활동가 발굴 및 확대’(6.00), ‘활동가들의 복리후생, 복지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인적 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 제공’·‘여성활동가에 대한 인식개선’(5.83)을 여성단체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지원체계들로 생각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6.03), ‘활동가들의 복리후생, 복지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6.00), ‘신규 활동가 및 기존 활동자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확대’(5.94)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부각된 세부사항은 ‘활동가들의 복리후생, 복지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협의회 5.83/ 네트워크 6.00),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협의회 6.00/ 네트워크 6.03)로 나타났다.

<표 4-34>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①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	6.17	5.33	.753	1.216
② 활동가들의 복리후생, 복지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5.83	6.00	.983	.901
③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6.00	6.03	.816	.810
④ 공공 및 민간분야 퇴직인력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5.33	5.39	1.033	1.088
⑤ 활동가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6.00	5.94	.632	.933
⑥ 신규 활동가 발굴 및 확대	6.00	5.94	.632	.933
⑦ 신규 활동가 및 기존 활동자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확대	5.50	5.94	1.378	1.116
⑧ 단체 유형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공	5.50	5.82	.837	1.158
⑨ 인적 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 제공	5.83	5.97	1.169	1.121
⑩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가의 의식 제고	5.67	5.79	1.033	1.083
⑪ 여성활동가에 대한 인식개선	5.83	5.79	.753	1.139
⑫ 활동가 대상 대학원, 전문교육 등 계속교육 기회 지원	5.50	5.97	1.049	1.015
⑬ 정부, 정당과 연대 강화	5.33	5.58	1.211	1.091

4.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1) 소속 단체의 정책과정 참여의 중요성

소속된 단체의 정책과정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35>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정책과정 참여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응답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 61.5%(24명), 정책 형성/결정 단계 53.8%(21명), 정책 평가 단계 64.1%(25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57.6%, 19명), 정책 형성/결정 단계(83.3%, 5명), 정책 집행 단계(66.7%, 4명), 정책 평가 단계(100.0%, 6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57.6%, 19명), 정책 형성/결정 단계(48.5%, 16명), 정책 평가 단계(57.6%, 19명), ‘다소 중요하다’ 응답에 정책 집행 단계(54.5%, 18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귀 단체는 아래 제시된 정책과정의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전체	0(0.0)	0(0.0)	4(10.3)	11(28.2)	24(61.5)
	협의회	0(0.0)	0(0.0)	1(16.7)	0(0.0)	5(83.3)
	네트워크	0(0.0)	0(0.0)	3(9.1)	11(33.3)	19(57.6)
② 정책 형성/결정 단계	전체	0(0.0)	0(0.0)	3(7.7)	15(38.5)	21(53.8)
	협의회	0(0.0)	0(0.0)	0(0.0)	1(16.7)	5(83.3)
	네트워크	0(0.0)	0(0.0)	3(9.1)	14(42.4)	16(48.5)
③ 정책 집행 단계	전체	0(0.0)	0(0.0)	3(7.7)	20(51.3)	16(41.0)
	협의회	0(0.0)	0(0.0)	0(0.0)	2(33.3)	4(66.7)
	네트워크	0(0.0)	0(0.0)	3(9.1)	18(54.5)	12(36.4)
④ 정책 평가 단계	전체	0(0.0)	0(0.0)	2(5.1)	12(30.8)	25(64.1)
	협의회	0(0.0)	0(0.0)	0(0.0)	0(0.0)	6(100.0)
	네트워크	0(0.0)	0(0.0)	2(6.1)	12(36.4)	19(57.6)

2) 소속 단체의 지난 1년간 정책과정 참여여부

소속된 단체의 지난 1년간 정책과정 참여여부는 다음 <표 4-36>과 같다. 본 질의문항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만 응답하여 분석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 82.4%(14명)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형성/결정 단계 76.5%(13명)·정책 집행단계 76.5%(13명), 정책 평가 단계 70.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6> 귀 단체는 지난 1년간 아래에 해당되는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구분		참여여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전체	4(22.2)	14(77.8)
	협의회	1(100.0)	0(0.0)
	네트워크	3(17.6)	14(82.4)
정책 형성/결정 단계	전체	5(27.8)	13(72.2)
	협의회	1(100.0)	0(0.0)
	네트워크	4(23.5)	13(76.5)
정책 집행 단계	전체	5(27.8)	13(72.2)
	협의회	1(100.0)	0(0.0)
	네트워크	4(23.5)	13(76.5)
정책 평가 단계	전체	6(33.3)	12(66.7)
	협의회	1(100.0)	0(0.0)
	네트워크	5(29.4)	12(70.6)

3) 소속 단체의 지난 1년간 정책과정에서 역할 수행 정도

소속된 단체의 지난 1년간 정책과정에서 역할 수행 정도는 다음 <표 4-37>과 같다. 모든 정책과정에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보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가 역할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5.04)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앞 <표 4-36>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5명이 역할 수행 정도의 질문에 응답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표 4-37> 귀 단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역할 수행 정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n=5)	네트워크(n=27)	협의회(n=5)	네트워크(n=27)
정책 의제 설정 단계	2.20	5.04	1.095	1.018
정책 형성/결정 단계	2.00	4.63	1.225	.967
정책 집행 단계	2.60	4.78	1.342	.751
정책 평가 단계	2.80	4.96	1.643	1.136

4) 소속 단체의 지난 1년간 유형별 정책과정 참여여부

소속된 단체의 지난 1년간 유형별 정책과정 참여여부는 다음 <표 4-38>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간담회·공청회·토론회에 100.0%(22명)로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위원회 81.8%(18명),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72.7%(16명), 모니터링단·서포터즈단·정책평가단 등 활동 63.6%(14명), 성별영향평가분석·성인지예산 컨설팅 활동 45.5%(10명), 정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성 주류화 추진 및 주민참여제도 등) 27.3%(6명), 위탁사업 추진 21.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간담회·공청회·토론회, 각종 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100.0%(2명)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간담회·공청회·토론회 100.0%(20명), 각종 위원회 80.0%(16명),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70.0%(14명), 모니터링단·서포터즈단·정책평가단 등 활동 65.0%(1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위탁사업 추진(협의회 50.0%, 네트워크 81.0%), 정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성

주류화 추진 및 주민참여제도 등)(협의회 50.0%, 네트워크 75.0%),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턴트 활동(협의회 50.0%, 네트워크 55.0%)은 다른 정책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귀 단체는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참여여부	
		참여하지않음	참여함
①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참석	전체	0(0.0)	22(100.0)
	협의회	0(0.0)	2(100.0)
	네트워크	0(0.0)	20(100.0)
② 각종 위원회 참석	전체	4(18.2)	18(81.8)
	협의회	0(0.0)	2(100.0)
	네트워크	4(20.0)	16(80.0)
③ 모니터링단, 서포터즈단, 정책평가단 등 활동	전체	8(36.4)	14(63.6)
	협의회	1(50.0)	1(50.0)
	네트워크	7(35.0)	13(65.0)
④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턴트 활동	전체	12(54.5)	10(45.5)
	협의회	1(50.0)	1(50.0)
	네트워크	11(55.0)	9(45.0)
⑤ 정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성 주류화 추진 및 주민참여제도 등)	전체	16(72.7)	6(27.3)
	협의회	1(50.0)	1(50.0)
	네트워크	15(75.0)	5(25.0)
⑥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전체	6(27.3)	16(72.7)
	협의회	0(0.0)	2(100.0)
	네트워크	6(30.0)	14(70.0)
⑦ 위탁사업 추진	전체	18(78.3)	5(21.7)
	협의회	1(50.0)	1(50.0)
	네트워크	17(81.0)	4(19.0)

5) 소속 단체의 지난 1년간 유형별 정책과정에서 역할 수행 정도

소속된 단체의 지난 1년간 유형별 정책과정에서 역할 수행 정도는 다음 <표 4-39>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각종 위원회 참석’(5.00)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각종 위원회 참석’(5.54),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5.30),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활동’(5.26)이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정책과정에서 역할 수행 정도가 높은 활동은 ‘각종 위원회 참석’(협의회 5.00/네트워크 5.54)으로 나타났다.

<표 4-39> 귀 단체가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유형별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역할 수행 정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5)	네트워크 (n=32)	협의회 (n=5)	네트워크 (n=32)
①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참석	4.20	4.91	.447	1.711
② 각종 위원회 참석	5.00	5.54	1.000	1.478
③ 모니터링단, 서포터즈단, 정책평가단 등 활동	3.40	4.85	2.191	1.460
④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활동	2.40	5.26	1.140	1.453
⑤ 정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성 주류화 추진 및 주민참여제도 등)	3.00	5.16	1.414	1.214
⑥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4.00	5.30	2.160	1.203
⑦ 위탁사업 추진	2.00	4.88	1.732	2.205

6) 소속 단체의 정책과정별 충분하게 참여여부

소속된 단체의 정책과정별 충분하게 참여여부는 <표 4-40>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보통이다’의 응답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 43.6%(17명), ‘정책 형성/결정 단계’ 51.3%(20명), ‘정책 집행 단계’ 46.2%(18명), ‘정책 평가 단계’ 48.7%(19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충분하지 않다’ 응답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50.0%, 3명), ‘정책 형성/결정 단계’(50.0%, 3명), ‘정책 집행 단계’(50.0%, 3명), ‘정책 평가 단계’(50.0%, 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보통이다’ 응답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45.5%, 15명), ‘정책 형성/결정 단계’(54.5%, 18명), ‘정책 집행 단계’(48.5%, 16명), ‘정책 평가 단계’(51.5%, 17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응답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충분하지 않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단체 모두 충분하다고는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귀 단체는 다음 정책과정에 충분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전체	1(2.6)	11(28.2)	17(43.6)	10(25.6)	0(0.0)
	협의회	0(0.0)	4(66.7)	2(33.3)	0(0.0)	0(0.0)
	네트워크	1(3.0)	7(21.2)	15(45.5)	10(30.3)	0(0.0)
② 정책 형성/ 결정 단계	전체	2(5.1)	11(28.2)	20(51.3)	6(15.4)	0(0.0)
	협의회	1(16.7)	3(50.0)	2(33.3)	0(0.0)	0(0.0)
	네트워크	1(3.0)	8(24.2)	18(54.5)	6(18.2)	0(0.0)
③ 정책 집행 단계	전체	1(2.6)	13(33.3)	18(46.2)	6(15.4)	1(2.6)
	협의회	1(16.7)	3(50.0)	2(33.3)	0(0.0)	0(0.0)
	네트워크	0(0.0)	10(30.3)	16(48.5)	6(18.2)	1(3.0)
④ 정책 평가 단계	전체	2(5.1)	11(28.2)	19(48.7)	7(17.9)	0(0.0)
	협의회	1(16.7)	3(50.0)	2(33.3)	0(0.0)	0(0.0)
	네트워크	1(3.0)	8(24.2)	17(51.5)	7(21.2)	0(0.0)

7) 소속 단체의 정책역량

소속된 단체의 정책역량은 다음 <표 4-4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보통이다’의 응답에 ‘정책과정 참여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다’ 56.4%(22명),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책사업에 많이 활용한다’ 43.6%(17명), ‘정부위원회 등 정책참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1.3%(20명), ‘정책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 43.6%(17명), ‘단체가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 56.4%(22명), ‘정책과정참여의 양적/질적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 51.3%(20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그렇다’ 응답에 ‘정부위원회 등 정책참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3.3%, 2명), ‘정책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50.0%, 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응답에 ‘정책과정 참여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다’ 33.3%(2명),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책사업에 많이 활용한다’ 33.3%(2명)로 정책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보통이다’ 응답에 ‘정책과정 참여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다’(63.6%, 21명),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책사업에 많이 활용한다’(48.5%, 16명), ‘정부위원회 등 정책참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57.6%, 19명), ‘정책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48.5%, 16명), ‘단체가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63.6%, 21명), ‘정책과정참여의 양적/질적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51.5%, 17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41〉 다음은 귀 단체의 정책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정책과정 참여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다	전체	1(2.6)	10(25.6)	22(56.4)	5(12.8)	1(2.6)
	협의회	1(16.7)	2(33.3)	1(16.7)	1(16.7)	1(16.7)
	네트워크	0(0.0)	8(24.2)	21(63.6)	4(12.1)	0(0.0)
②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책사업에 많이 활용한다	전체	1(2.6)	4(10.3)	17(43.6)	16(41.0)	1(2.6)
	협의회	1(16.7)	2(33.3)	1(16.7)	1(16.7)	1(16.7)
	네트워크	0(0.0)	2(6.1)	16(48.5)	15(45.5)	0(0.0)
③ 정부위원회 등 정책참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2(5.1)	7(17.9)	20(51.3)	9(23.1)	1(2.6)
	협의회	2(33.3)	1(16.7)	1(16.7)	2(33.3)	0(0.0)
	네트워크	0(0.0)	6(18.2)	19(57.6)	7(21.2)	1(3.0)
④ 정책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	전체	1(2.6)	4(10.3)	17(43.6)	14(35.9)	3(7.7)
	협의회	1(16.7)	1(16.7)	1(16.7)	3(50.0)	0(0.0)
	네트워크	0(0.0)	3(9.1)	16(48.5)	11(33.3)	3(9.1)
⑤ 단체가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	전체	1(2.6)	10(25.6)	22(56.4)	6(15.4)	0(0.0)
	협의회	1(16.7)	4(66.7)	1(16.7)	0(0.0)	0(0.0)
	네트워크	0(0.0)	6(18.2)	21(63.6)	6(18.2)	0(0.0)
⑥ 정책과정참여의 양적/질적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	전체	2(5.1)	4(10.3)	20(51.3)	12(30.8)	1(2.6)
	협의회	2(33.3)	1(16.7)	3(50.0)	0(0.0)	0(0.0)
	네트워크	0(0.0)	3(9.1)	17(51.5)	12(36.4)	1(3.0)

8) 정책참여 및 역량 관련 문제점의 심각성

정책참여 및 역량 관련 문제점의 심각성은 다음 <표 4-42>와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의제 발굴 역량 미비’·‘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NGO간 정책역량 격차’(6.33), ‘정부부처의 여성단체와 협력관계 인식 부족’·‘행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로 신뢰관계 구축 미흡’(6.00),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관심분야와 활동’(5.83)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행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로 신뢰관계 구축 미흡’(6.15), ‘정부부처의 양성평등관련 역량 부족’(5.88), ‘정부부처의 여성단체와 협력관계 인식부족’(5.82)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심각성이 부각된 세부사항은 ‘행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로 신뢰관계 구축 미흡’(협의회 6.00/ 네트워크 6.15), ‘정부부처의 여성단체와 협력관계 인식 부족’(협의회 6.00/ 네트워크 5.82)으로 나타났다.

<표 4-42>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책참여 및 역량 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6)	네트워크 (n=33)	협의회 (n=5)	네트워크 (n=33)
①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의제 발굴 역량 미비	6.33	4.70	1.211	1.357
② 정책과정의 제한적 참여기회(정책의제설정과정에 국한됨)	5.50	5.64	1.643	1.055
③ 수동적/형식적 정책과정 참여	5.67	5.36	1.506	1.141
④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부족	5.67	4.97	1.211	1.237
⑤ 정부부처의 여성단체와 협력관계 인식 부족(여성단체는 동원대상, 자원봉사 활동 대상 등)	6.00	5.82	1.265	1.158
⑥ 정부부처의 양성평등관련 역량 부족	4.50	5.88	1.761	1.193
⑦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정책참여관련 법/제도 미비	5.17	5.70	1.329	1.159
⑧ 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NGO간 정책역량 격차	6.33	5.00	1.211	1.199
⑨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관심분야와 활동	5.83	5.76	1.169	1.200
⑩ 행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로 신뢰관계 구축 미흡	6.00	6.15	1.095	1.034

9)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은 다음 <표 4-43>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젠더 및 양성평등관련 지원 강화’·‘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단체 및 여성NGO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6.43),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청년여성의 여성이슈관련 정책과정 참여 지원’·‘정책참여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여성정책의제 발굴 및 정기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6.29), ‘젠더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정책과정 참여’·‘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과정 참여의 투명성 확보’, ‘시민단체들이 공유하는 여성정책 발굴’, ‘공무원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6.14)을 여성단체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체계들로 생각하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6.30), ‘공무원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6.24),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젠더 및 양성평등관련 지원 강화’(6.18)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여성단체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은 평균 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43〉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지속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7)	네트워크 (n=33)	협의회 (n=7)	네트워크 (n=33)
①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젠더 및 양성평등관련 지원 강화	6.43	6.18	1.34	.882
②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6.29	6.30	1.113	.883
③ 젠더 및 양성평등관련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정책역량강화 교육 확대	6.00	6.06	1.155	.998
④ 젠더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정책과정 참여	6.14	6.03	1.069	.984
⑤ 청년여성의 여성이슈관련 정책과정 참여 지원	6.29	6.06	1.254	.933
⑥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과정 참여 할당제 실시	5.14	5.76	1.773	1.347
⑦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과정 참여의 투명성 확보	6.14	6.00	1.464	1.225
⑧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	6.00	5.94	1.414	.933
⑨ 정책참여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6.29	5.73	1.113	1.206
⑩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단체 및 여성NGO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	6.43	5.82	1.134	.983
⑪ 시민과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환류 시스템 마련	5.86	5.91	1.345	.947
⑫ 여성정책의제 발굴 및 정기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	6.29	5.91	1.113	1.071
⑬ 일반시민과 여성단체의 공동 이슈 발굴	5.86	5.79	1.215	1.023
⑭ 시민단체들이 공유하는 여성정책 발굴	6.14	5.79	1.215	1.053
⑮ 공무원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6.14	6.24	1.215	.969

5.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1) 소속 단체의 다른 분야와의 협력의 필요성

소속된 단체의 다른 분야와의 협력의 필요성은 <표 4-44>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에 ‘시민사회분야’ 57.5%(23명), ‘공공분야’ 60.0%(24명), ‘민간분야’ 45.0%(18명), ‘학교 및 연구기관’ 47.5%(19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다소 필요하다’ 응답에 ‘공공분야’(57.1%, 4명), ‘민간분야’(71.4%, 5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매우 필요하다’ 응답에 ‘시민사회분야’(66.7%, 22명), ‘공공분야’(69.7%, 23명), ‘민간분야’(54.5%, 18명), ‘학교 및 연구기관’(51.5%, 17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 비해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44> 귀 단체는 다음 분야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시민사회분야	전체	0(0.0)	0(0.0)	5(12.5)	12(30.0)	23(57.5)
	협의회	0(0.0)	0(0.0)	4(57.1)	2(28.6)	1(14.3)
	네트워크	0(0.0)	0(0.0)	1(3.0)	10(30.3)	22(66.7)
② 공공분야	전체	0(0.0)	0(0.0)	3(7.5)	13(32.5)	24(60.0)
	협의회	0(0.0)	0(0.0)	2(28.6)	4(57.1)	1(14.3)
	네트워크	0(0.0)	0(0.0)	1(3.0)	9(27.3)	23(69.7)
③ 민간분야	전체	0(0.0)	0(0.0)	6(15.0)	16(40.0)	18(45.0)
	협의회	0(0.0)	0(0.0)	2(28.6)	5(71.4)	0(0.0)
	네트워크	0(0.0)	0(0.0)	4(12.1)	11(33.3)	18(54.5)
④ 학교 및 연구기관	전체	0(0.0)	0(0.0)	6(15.0)	15(37.5)	19(47.5)
	협의회	0(0.0)	0(0.0)	3(42.9)	2(28.6)	2(28.6)
	네트워크	0(0.0)	0(0.0)	3(9.1)	13(39.4)	17(51.5)

2) 소속 단체의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형성 및 유지 정도

소속된 단체가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형성(연대활동) 및 유지 정도는 <표 4-45>와 같다. 시민사회분야와 네트워크 형성 여부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풀뿌리단체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단체 또는 여성 NGO(3명, 100.0%)와 다른 이슈의 NGO(5명, 100.0%)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 네트워크는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32명, 100.0%), 다른 이슈의 NGO(28명, 87.5%), 지역풀뿌리단체(10명, 34.5%) 순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와 네트워크 형성 여부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정부(3명, 60.0%), 공공기관(2명, 50.0%), 의회(1명, 25.0%) 순으로,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공공기관(23명, 71.9%), 정부(18명, 56.3%), 의회(12명, 38.7%) 순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분야와 네트워크 형성 여부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기업(2명, 40.0%), 금융(1명, 20.0%) 순으로,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언론(11명, 34.4%), 기업(6명, 19.4%), 금융(4명, 12.5%) 순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여부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초·중·고(4명, 66.7%), 여성정책 연구기관(3명, 75.0%) 순으로,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정책 연구기관(17명, 54.8%), 초·중·고(13명, 43.3%), 대학·일반 연구기관(6명, 19.4%) 순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별 차이는 있겠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5〉 현재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형성(연대활동) 및 유지 정도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

구분			네트워크 형성 여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면 네트워크 유지 여부	
			네트워크 형성하지 않음	네트워크 형성함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않음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음
시민 사회 분야	① 지역풀뿌리단체	협의회	5(100.0)	0(0.0)	1(100.0)	0(0.0)
		네트워크	19(65.5)	10(34.5)	1(7.7)	12(92.3)
	②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	협의회	0(0.0)	3(100.0)	0(0.0)	4(100.0)
		네트워크	0(0.0)	32(100.0)	1(3.2)	30(96.8)
	③ 다른 이슈의 NGO (시민단체)	협의회	0(0.0)	5(100.0)	1(25.0)	3(75.0)
		네트워크	4(12.5)	28(87.5)	1(3.2)	30(96.8)
공공 분야	④ 정부(중앙/지방)	협의회	2(40.0)	3(60.0)	0(0.0)	3(100.0)
		네트워크	14(43.8)	18(56.3)	1(6.7)	14(93.3)
	⑤ 의회(국회/지방의회)	협의회	3(75.0)	1(25.0)	1(100.0)	0(0.0)
		네트워크	19(61.3)	12(38.7)	3(25.0)	9(75.0)
	⑥ 공공기관(중간지원 조직 등)	협의회	2(50.0)	2(50.0)	0(0.0)	1(100.0)
		네트워크	9(28.1)	23(71.9)	0(0.0)	19(100.0)
민간 분야	⑦ 기업	협의회	3(60.0)	2(40.0)	0(0.0)	0(0.0)
		네트워크	25(80.6)	6(19.4)	0(0.0)	3(100.0)
	⑧ 금융	협의회	4(80.0)	1(20.0)	0(0.0)	0(0.0)
		네트워크	28(87.5)	4(12.5)	0(0.0)	2(100.0)
	⑨ 언론	협의회	4(100.0)	0(0.0)	0(0.0)	1(100.0)
		네트워크	21(65.6)	11(34.4)	2(25.0)	6(75.0)
학교/ 연구 기관	⑩ 대학	협의회	5(100.0)	0(0.0)	0(0.0)	0(0.0)
		네트워크	25(80.6)	6(19.4)	1(25.0)	3(75.0)
	⑪ 여성정책 연구기관	협의회	1(25.0)	3(75.0)	0(0.0)	2(100.0)
		네트워크	14(45.2)	17(54.8)	1(10.0)	9(90.0)
	⑫ 일반 연구기관	협의회	5(100.0)	0(0.0)	0(0.0)	0(0.0)
		네트워크	25(80.6)	6(19.4)	0(0.0)	3(100.0)
⑬ 초중고	협의회	2(33.3)	4(66.7)	0(0.0)	3(100.0)	
	네트워크	17(56.7)	13(43.3)	7(41.2)	10(58.8)	

3) 소속 단체의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유형

소속된 단체가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유형은 <표 4-46>과 같다. 시민사회분야와 네트워크 협력유형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 다른 이슈의 NGO와 정보 및 의견 교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공동사업 추진·공식적 계약에 있어 모두 33.3%의 고른 협력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지역플뿌리 단체(56.3%, 9명),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43.9%, 29명), 다른 이슈의 NGO(48.3%, 29명)와 정보 및 의견 교환에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와 네트워크 협력유형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정부(50.0%, 2명), 공공기관(50.0%, 2명)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정부(48.1%, 13명), 의회(55.6%, 10명), 공공기관(51.7%, 15명)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분야와 네트워크 협력유형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응답이 없었으며,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기업(2명, 40.0%), 언론(6명, 66.7%)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응답률뿐만 아니라 기업(2명, 40.0%), 금융(1명, 100.0%)과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유형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정책 연구기관(100.0%, 1명)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초·중·고(33.3%, 1명)는 정보 및 의견 교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공동사업 추진·공식적 계약에 있어 고른 협력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정책 연구기관(68.4%, 13명), 일반 연구기관(68.4%, 13)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초·중·고(38.1%, 8명)와는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6〉 현재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유형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

구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면 협력유형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중복응답 가능)		
			정보 및 의견 교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공동사업 추진, 공식적 계약 등
시민 사회 분야	① 지역풀뿌리단체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9(56.3)	3(18.8)	4(25.0)
	②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	협의회	1(33.3)	1(33.3)	1(33.3)
		네트워크	29(43.9)	17(25.8)	20(30.3)
	③ 다른 이슈의 NGO(시민단체)	협의회	2(33.3)	2(33.3)	2(33.3)
		네트워크	29(48.3)	16(26.7)	15(25.0)
공공 분야	④ 정부(중앙/지방)	협의회	2(50.0)	1(25.0)	1(25.0)
		네트워크	13(48.1)	5(18.5)	9(33.3)
	⑤ 의회(국회/지방의회)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10(55.6)	3(16.7)	5(27.8)
	⑥ 공공기관(중간지원 조직 등)	협의회	2(50.0)	1(25.0)	1(25.0)
		네트워크	15(51.7)	4(13.8)	10(34.5)
민간 분야	⑦ 기업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2(40.0)	2(40.0)	1(20.0)
	⑧ 금융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0(0.0)	1(100.0)	0(0.0)
	⑨ 언론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6(66.7)	1(11.1)	2(22.2)
학교/ 연구 기관	⑩ 대학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2(66.7)	0(0.0)	1(33.3)
	⑪ 여성정책 연구기관	협의회	1(100.0)	0(0.0)	0(0.0)
		네트워크	13(68.4)	3(15.8)	3(15.8)
	⑫ 일반 연구기관	협의회	0(0.0)	0(0.0)	0(0.0)
		네트워크	2(33.3)	2(33.3)	2(33.3)
	⑬ 초·중·고	협의회	1(33.3)	1(33.3)	1(33.3)
		네트워크	6(28.6)	8(38.1)	7(33.3)

4) 소속 단체의 분야별 협력의 충분성

소속된 단체의 분야별 협력의 충분성은 <표 4-4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보통이다’의 응답에 ‘시민사회분야’ 41.0%(16명), ‘공공분야’ 59.0%(23명), ‘민간분야’ 50.0%(19명), ‘학교 및 연구기관’ 41.0%(16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충분하다’ 응답에 ‘공공분야’(33.3%, 2명), ‘보통이다’ 응답에는 ‘시민사회 분야’(50.0%, 3명), ‘공공분야’(33.3%, 2명), ‘민간분야’(60.0%, 3명), ‘학교 및 연구기관’(66.7%, 4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다소 충분하다’ 응답에 ‘시민사회 분야’(45.5%, 15명), ‘보통이다’ 응답에는 ‘공공분야’(63.6%, 21명), ‘민간분야’(48.5%, 16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47> 귀 단체는 다음 분야와 충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시민사회분야	전체	0(0.0)	2(5.1)	16(41.0)	15(38.5)	6(15.4)
	협의회	0(0.0)	1(16.7)	3(50.0)	0(0.0)	2(33.3)
	네트워크	0(0.0)	1(3.0)	13(39.4)	15(45.5)	4(12.1)
② 공공분야	전체	1(2.6)	8(20.5)	23(59.0)	5(12.8)	2(5.1)
	협의회	0(0.0)	2(33.3)	2(33.3)	0(0.0)	2(33.3)
	네트워크	1(3.0)	6(18.2)	21(63.6)	5(15.2)	0(0.0)
③ 민간분야	전체	1(2.6)	11(28.9)	19(50.0)	6(15.8)	1(2.6)
	협의회	0(0.0)	1(20.0)	3(60.0)	1(20.0)	0(0.0)
	네트워크	1(3.0)	10(30.3)	16(48.5)	5(15.2)	1(3.0)
④ 학교 및 연구기관	전체	2(5.1)	15(38.5)	16(41.0)	6(15.4)	0(0.0)
	협의회	0(0.0)	1(16.7)	4(66.7)	1(16.7)	0(0.0)
	네트워크	2(6.1)	14(42.4)	12(36.4)	5(15.2)	0(0.0)

5) 소속 단체의 거버넌스 역량

소속된 단체의 거버넌스(네트워크) 역량은 다음 <표 4-4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에 ‘단체활동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민을 잘 활용한다’ 51.3%(20명),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48.7%(19명),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48.7%(19명),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단체의 역량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46.2%(18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38.5%(15명)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우 그렇다’ 응답에 ‘정부 및 기업 등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다’(33.3%, 2명), ‘단체활동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민을 잘 활용한다’(33.3%, 2명),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33.3%, 2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33.3%, 2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그렇다’ 응답에 ‘단체활동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민을 잘 활용한다’(54.5%, 18명),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51.5%, 17명),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48.5%, 16명),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단체의 역량강화에 투자하고 있다’(54.5%, 18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39.4%, 1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지역 풀뿌리여성조직과의 연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에 대해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보통이다’ 45.5%(15명)로 응답한 반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그렇지 않다’ 50.0%(3명)로 응답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다음은 귀 단체의 거버넌스(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정부 및 기업 등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다	전체	1(2.6)	6(15.4)	18(46.2)	11(28.2)	3(7.7)
	협의회	0(0.0)	1(16.7)	1(16.7)	2(33.3)	2(33.3)
	네트워크	1(3.0)	5(15.2)	17(51.5)	9(27.3)	1(3.0)
② 단체활동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민을 잘 활용한다	전체	0(0.0)	3(7.7)	13(33.3)	20(51.3)	3(7.7)
	협의회	0(0.0)	1(16.7)	1(16.7)	2(33.3)	2(33.3)
	네트워크	0(0.0)	2(6.1)	12(36.4)	18(54.5)	1(3.0)
③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체	0(0.0)	2(5.1)	9(23.1)	19(48.7)	9(23.1)
	협의회	0(0.0)	1(16.7)	1(16.7)	2(33.3)	2(33.3)
	네트워크	0(0.0)	1(3.0)	8(24.2)	17(51.5)	7(21.2)
④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전체	0(0.0)	3(7.7)	8(20.5)	19(48.7)	9(23.1)
	협의회	0(0.0)	1(16.7)	1(16.7)	3(50.0)	1(16.7)
	네트워크	0(0.0)	2(6.1)	7(21.2)	16(48.5)	8(24.2)
⑤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단체의 역량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0(0.0)	3(7.7)	15(38.5)	18(46.2)	3(7.7)
	협의회	0(0.0)	1(16.7)	5(83.3)	0(0.0)	0(0.0)
	네트워크	0(0.0)	2(6.1)	10(30.3)	18(54.5)	3(9.1)
⑥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전체	0(0.0)	5(12.8)	12(30.8)	15(38.5)	7(17.9)
	협의회	0(0.0)	0(0.0)	2(33.3)	2(33.3)	2(33.3)
	네트워크	0(0.0)	5(15.2)	10(30.3)	13(39.4)	5(15.2)
⑦ 지역 풀뿌리여성조직과의 연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	전체	2(5.1)	11(28.2)	16(41.0)	8(20.5)	2(5.1)
	협의회	0(0.0)	3(50.0)	1(16.7)	1(16.7)	1(16.7)
	네트워크	2(6.1)	8(24.2)	15(45.5)	7(21.2)	1(3.0)

6)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심각성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심각성은 다음 <표 4-49>와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특정 여성단체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5.50), ‘지속적 거버넌스를 위한 체계구축 미비’·‘활동가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 ‘공무원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5.33), ‘거버넌스 역량·특성 차이가 큼’·‘거버넌스를 저해하는 개인의 기회주의적 활동’(5.17)을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공무원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형식적 거버넌스(구색맞추기) 운영’(5.70), ‘행정기관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5.36),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신뢰 부족’(5.27)이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과정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분석되지 않았으나,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가 거버넌스 구성측면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거버넌스 운영측면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9> 귀 단체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6)	네트워크 (n=33)	협의회 (n=6)	네트워크 (n=33)
① 행정기관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5.17	5.36	1.329	1.270
② 지속적 거버넌스를 위한 체계구축 미비	5.33	5.28	1.366	1.250
③ 활동가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	5.33	4.42	1.366	1.251
④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5.50	5.03	1.517	1.287
⑤ 특정 여성단체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5.50	4.55	1.378	1.301
⑥ 공무원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	5.33	5.70	1.033	1.262
⑦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신뢰 부족	4.83	5.27	1.835	1.306
⑧ 형식적 거버넌스(구색맞추기) 운영	5.17	5.70	1.941	1.237
⑨ 거버넌스 역량/ 특성 차이가 큼	5.17	5.15	1.835	1.278
⑩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개인의 기회주의적 활동	5.17	4.70	1.941	1.311

7)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거버넌스(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은 다음 <표 4-50>과 같다.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네트워크 효과성 및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 기회 제공’·‘공동사업 지원제도 및 활성화’·‘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지속성 확보’(6.50)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여성NGO가 참여하는 지역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장단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6.33) 등도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지속성 확보’(6.27),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6.21), ‘다양한 참여자간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 절차 마련’·‘여성단체 또는 여성NGO의 거버넌스 참여비율 할당제’(6.12)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지원체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 평균이 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50>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거버넌스(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협의회 (n=6)	네트워크 (n=33)	협의회 (n=6)	네트워크 (n=33)
① 지자체의 네트워킹 지원	5.67	5.67	1.506	.990
② 다양한 행위자간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풀뿌리조직 등)관계 형성	5.67	5.94	1.211	1.029
③ 다양한 행위자들의(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풀뿌리조직 등) 참여 확보	6.17	5.97	.983	1.075
④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	6.33	6.21	1.033	.857
⑤ 네트워크 효과성 및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6.50	6.00	.837	1.000
⑥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 NGO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	6.17	6.00	.753	1.000
⑦ 다양한 참여자간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절차 마련	6.17	6.12	.983	.781
⑧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풀뿌리여성조직 발굴 및 육성	6.00	6.06	1.095	.933
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단체 육성	5.83	5.88	.983	.960
⑩ 여성NGO가 참여하는 지역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장단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6.33	6.09	.816	.980
⑪ 공동사업 지원제도 및 활성화	6.50	5.94	.837	.899
⑫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지속성 확보	6.50	6.27	.837	.911
⑬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의 거버넌스 참여비율 할당제	6.17	6.12	.983	.992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는 이유는 여성단체 대표 및 임원들의 실제 활동경험, 활동현황 및 애로사항 그리고 역량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직접 듣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수원시와 관계형성과정,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여성단체가 지니는 영향력과 애로사항 등을 중점으로 인터뷰하였다.

기존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가 표면적인 문제에 보다 접근한다면, 심층면접조사는 여성단체가 지니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원시 여성단체가 희망하는 거버넌스 역량 그리고 수원시민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지향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사 내용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 여성단체 대표 및 임원 18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23일, 9월 4일, 9월 10일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질문지(가이드라인)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와 설문지 문항에서 미흡한 부분, 추가로 확인할 부분 등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방식은 직접 만나 인터뷰를 수행하는 라운드테이블로 환경을 조성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 <표 4-51>과 같다.

<표 4-51> 심층면접조사(FGI) 집단구분 및 조사내용

집단구분	조사내용	
여성단체 대표 및 임원	여성단체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별 대표 임기 • 여성단체의 역할 • 회원 관리 • 운영상의 애로사항 • 차세대 활동가 육성
	거버넌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와 수원시와의 관계 • 위원회 활동 •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 자체적 방안 •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방안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분석 결과

1) 여성단체 운영 현황

수원시 여성단체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앞서 여성단체별 대표의 임기를 확인하였다. 여성단체 대표의 임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통해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장기성 여부와 조직구조의 순환이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표의 임기만을 확인하였다.

수원시 여성단체는 대체로 2년의 대표임기를 가지고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 내 여성단체는 대체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의 규정을 가졌으나, 수원가족지원센터는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수원여성의전화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다. 여성단체 대표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란 임기 내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단체를 선순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원시 여성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및 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수원시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여성정책과' 설치에 일조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성평등전문관'의 필요성 요구,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정책입안 요청,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성인 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단체의 역할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환경, 여성, 청소년, 소비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실제 모든 분야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다양한 분야에 동원되고 봉사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하였다.

A 단체) 수원시에 여성단체가 설립되고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과 여성정책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의 결과 '여성정책과'가 신설될 때, 여성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평등전문관'의 필요성을 시장 직속의 2급이나 3급으로 임명되어 시정운영에 성인지적 요인들을 시시각각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 6급으로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6급에 위치하여 정책입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 의문이 들지만, 우선적으로 '성평등전문관'이 도입된 것이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 단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와 봉사가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단체의 주된 역할입니다. 간혹 자발적 참여로 인해 단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성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대가 변화하면서 구위공무원과 시의회 등에 여성들이 많이 포진하여 여성단체의 역할과 관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역할부여와 관심의 지속적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재정 확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는데, 재정의 확보는 여성단체 자체수익활동과 회비로만으로 충당하다보니 단체의 운영과 계획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어려움은 활동가의 처우개선, 회원 충원 및 활동 증진 등을 토로하였다. 활동가의 임금이나 복지 등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장기 회원들은 연령대가 높아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신규 회원들과 연령의 차이가 커 현 시점이 회원활동 증진과 회원 충원 모두에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로 생각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활동가의 전문성 부족 및 정체성 문제 그리고 여성단체 홍보 부족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귀결되었다.

C 단체) 여성단체 운영에 있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성단체는 활동인력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재정여건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충원을 통해 회비를 마련하는 것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회비가 단체 운영비에 미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미래지향성을 위한 차세대 활동가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과거 활동가와 달리 젊은 세대 활동가는 본인의 기본권과 복리후생, 저녁이 있는 삶 등이 보장되어가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활동가의 역량, 전문성, 인성 등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기반들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차세대 활동가 육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마인드 개선 교육 등의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의식화된 활동가를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초·중·고·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수의 역량있는 활동가들이 활동반경을 넓히고 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D 단체) 차세대 활동가는 과거의 활동가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본인의 신념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희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가 가지는 목표와 활동가의 신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해야겠지만, 현재의 조직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며, 저력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변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는 흐름에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으나, 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며, 중앙·지방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독려가 차세대 활동가를 육성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거버넌스 현황

수원시 여성단체의 거버넌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여성단체와 수원시와의 관계, 여성단체의 위원회 활동,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여성단체와 수원시와의 관계에 대해 모든 단체에서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수원시와 협업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자율성과 독창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시와 하는 일을 기피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여성단체의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시적소에 여성단체와 협업 보다는 수원시가 대응하기에 유리하거나 소통하기 편리한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수원시가 주최하는 사업(행사)에 ‘동참’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E 단체) 수원시와 관계 형성시 여성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수원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독창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며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약이 심하다고 느낍니다. 즉, 수원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제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시 여성단체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위원회 활동 여부와 활동 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1개~2개 정도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참석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활동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시정에 대한 정보 획득과 경험 획득을 이야기하였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 수행 부족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정책의제 설정단계부터 형성·결정, 집행, 평가단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개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의견수렴보다는 준비된 의제에 동의하고 이미 결정된 정책

에 동의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은 기관의 목소리가 아닌 각자 전문분야의 목소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F 단체) 위원회는 정책활동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정작 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가 시행을 반대하는 타당한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수정되지 못할 것이며, 결과가 나온 정책을 가지고 평가하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수원시 여성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 방안을 물어본 결과 여성단체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현재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은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의견으로는 거버넌스 체계가 올바른 구성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시장과의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실·국·과장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이 아니라도 현안과 같이 각각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의 장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G 단체) 저희 단체가 수원시와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올바른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수원시 정책을 이끄는 핵심 그룹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 과장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저희 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가 목표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자체적 방안, 지원 방안, 시민 공동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첫째, 여성단체 자체적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역량강화 통합교육 실시,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선, 상근활동가 처우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등 기존 여성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단위가 큰 법인이나 전국에 지사를 둔 여성단체는 자

체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여성단체는 자체적인 교육훈련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곧 자체적 역량강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시간적, 공간적, 인적 여건 등 모든 부분에서의 여건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소 여성단체 간의 역량강화교육의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즉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무나 재정 및 중앙·지방정부 지원 사업 관련 업무 등을 함께 배우며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의견으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발 빠른 정보 취득 및 대응’→‘활동가 교육’→‘프로그램 개발’→‘회원 교육’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단체 운영 전반적인 과정의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H 단체)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는 발 빠른 정보 취득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 회원 순으로 단체 운영에 프로세스가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정적 역량은 당장 해결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단체 역량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활동가 측면에서는 더욱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근활동가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처우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은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단체의 회비는 운영비 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 개선과 활동가 처우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익사업 개발은 여성단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유형도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 및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사업은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단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I 단체) 여성단체의 수익창출은 대체적으로 교육사업, 상담업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성단체의 수익창출 사업들을 수원시 여성단체들이 직접 배우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원 방안으로는 절대적으로 수원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수원시 여성단체는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운영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 활동 대상이 대체로 수원시에 한정되어 있어 수원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신청하고 지원받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여성단체는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겠으나 지원받는데 있어 몇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원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쉽지 않으며,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회 활동과 정책 의제설정부터 평가까지 전반에 걸쳐 도중에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사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재차 설명해 줘야하는 등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시 지원 사업은 인건비 책정이 어렵고, 자부담이 부담되는 단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원시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지원에 있어 공무원과의 신뢰 구축 그리고 지원 사업 운영체계에 대한 불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 단체) 수원시가 여성단체를 위해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업을 지원해준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시 입장에서는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사업의 과정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시 공무원이 너무 자주 순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 공무원과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고 추진력을 얻을 만하면 바뀌게 되고, 새로운 공무원은 사업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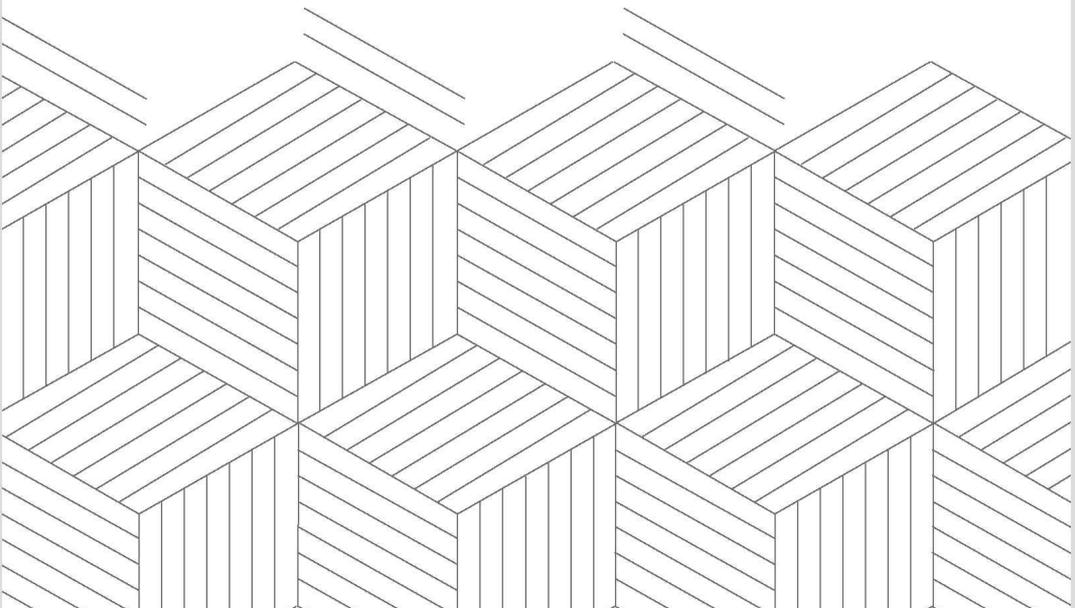
그리고 지원 사업의 자부담금은 단체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지원 사업에는 특히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크게 운영하려고 해도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셋째, 시민 공동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해 활동가와 회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시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접하게 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동조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다. 결국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안과 여성이라는 공통의 주제 및 공감을 쌓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모임(지역공동체)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회원들과의 유대감 및 본인과 회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여성단체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 단체) 과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고자 혹은 활동경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회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시민단체 혹은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고, 활동은 단체가 아닌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체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수원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함께 운영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장 정책 제언

제1절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
제2절 수원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제5장 정책 제언

제1절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

1.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활동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 결과 여성단체 상근활동가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5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60대 이상의 상근활동가가 50%를 넘는 단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연령대별 회비 납부 회원 현황은 20~30대에서 30%가 있는 한 단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15% 미만이었으며, 40~50대가 평균 61.6%로 회원비중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신규 회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연령대는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여성단체의 본질과 달리 특정 연령대를 대변하는 단체로 인식되거나, 세대 간 의견 차이 및 인식의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현재 여성단체가 지니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재정 여건의 악화와 신규 회원 충원 어려움 등 단체 활성화 보다 단체 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방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단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활동가 육성을 통한 세대 간 소통 강화와 젊은 세대의 신규 회원 충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세대 활동가 육성은 젊은 20~30대를 리더로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단체 회원의 주요 세대층을 이해하고 기존 회원들과 신규 회원들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단체 운영에 있어 20~30대 참여의 부진은 변화하는 여성관련 이슈에 민감하지 못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자유로운 방식의 활동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재 여성단체 운영방식에 공감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부딪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세가 절실하며 이를 이끌 차세대 활동가의 육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수원시 여성단체의 차세대 활동가 육성을 위해서는 단체별 자체적으로 차세대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및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광역시나 도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어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차세대 활동가 육성’, ‘청년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 수원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설명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을 위한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수립된 계획 이후에 중앙·지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단체별 자체적인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어려울 경우,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세대 활동가 육성 과정 및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논의 및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준 확대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은 총 8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본 보고서 p.50,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기금의 용도) 참조), 현재 지원 사업은 시민을 위한 교육 및 축제, 홍보물 발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를 종합해보면, 수원시 여성단체는 자체적인 역량, 활동가의 전문성 등에서 주관적인 기준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 이상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별 대안은 단체의 규모 및 여건 등의 차이로 조성 환경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가 현재 지니고 있는 역량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역량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혹은 갖추기 어려운 여성단체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기준의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 제3장 <표 3-18>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수원시 여성단체 사업비 현황에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선정된 사업은 2016년 ‘강사단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지원액 6,270 천원)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원된 적이 없다.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수원시 입장에서는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거나, 특정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역량강화 관련 사업이 여성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꺼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활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여성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추진하므로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량실태조사의 인적자원역량과 관련하여 인적자원관리 문제점으로 '인적자원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정부/지자체/기타)의 지원 미비'는 평균 5.4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에서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는 평균 6.03으로 여성단체의 요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여성단체를 위한 예산은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조성되므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매년 일정 부분 필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3. 다양한 형식을 통한 수원시 내 위원회 구성

수원시의 공공분야 정책과정에서 여성단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는 위원회에 임명되는 것으로 수원시정 분야별 의사를 표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앙정부는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40%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동일한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하지만 여성위원의 비율달성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활동하게 되거나, 전문성이나 현장경험 등 위원회에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기보다는 성비만을 우선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은 여성단체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 유입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역량실태조사에서 수원시 여성단체의 각종 위원회 참여여부는 81.8%(18명)로 높은 반면 정책과정별(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형성/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참여의지는 높으나 참여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GI 분석결과 현재 위원회는 시에서 위원 구성을 주도적으로 선발하여 준비된 의제에 동의하고 이미 결정된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소속 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여성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통해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는 위원회는 제5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을 모티브로 기 추진된 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을 보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일의 모집기간을 두고 시민공모 위원⁷⁾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위원⁸⁾을 모집하며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반의 정책·교육·홍

7) 시민공모 위원 신청자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시 소재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위원 신청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수원시 소재 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보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있다.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은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자발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여성단체 여성 및 시민들로 위원이 구성된다면 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 보다 각자의 역량강화 및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시 주도적 위원회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제5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포스터

제5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수원시 예산편성 과정에 함께 참여하실 시간을 맞습니다

모집기간 2019. 10. 28.(월) ~ 11. 26.(화) [30일간]

모집인원 160명 이내(시 위원회 40명, 구 지역회의 120명)

신청자격 시민공모 위원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 시 소재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위원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수원시 소재 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모집공고 배너 클릭)
 E-mail 신청 후 접수확인 : woojy7@korea.kr(접수확인 ☎ 228-3056)
 방문·우편 신청 및 접수처
 - 수원시청 예산재정과 주민참여예산팀(☎228-3056)
 - 각 구청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
 (장안구 ☎228-5217, 권선구 ☎228-6217, 팔달구 ☎228-7211, 영통구 ☎228-8513)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 체납자, 시의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촉된 자, 기 연임 활동 위원, 위촉 해제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 배너 또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제2절 수원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1. 수원시와 여성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정비

수원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방안은 수원시와 여성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에서 여성단체는 정책과정 참여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든 단계에서 50% 이상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질의문항이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 협조를 통한 정책과정의 참여인지를 세부적으로 묻지 못해 심도 깊은 분석은 어려우나 정책참여가 높지 않은 수준임은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수원시가 여성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닌 간섭의 존재 혹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지원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주된 역할로 현재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 참석을 통해 여성단체는 들러리 역할만을 하는 등 행정 중심적 거버넌스 혹은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수원시 여성단체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여성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수원시가 여성단체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수원시 여성단체는 수원시와 관계에 있어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와 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시적인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참여 촉진,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협의 단계에서 참여 촉진, 정책개선안 수렴 및 실질적 수행 등 다방면에서 공동 참여, 협의, 숙의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수원시가 앞장서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이며 공평한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원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수원시 여성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 증진

수원시 여성단체는 재정운영에 있어 회원의 예산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회비를 통한 단체 운영보다는 수원시 및 정부의 지원 사업 등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회비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원시 여성단체가 소규모일수록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여성단체 역량실태조사에서도 재정관련 문제점에서 ‘홍보예산 부족’은 평균 5.76,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도에서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회원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평균 6.0으로 홍보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여성단체별 자체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원시의 지원을 통해 홍보효과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면, 수원시 여성단체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수원시는 우선 온라인을 활용한 여성단체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수원시 여성단체에 대한 홍보와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수원시민 누구나 여성단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 고충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수원시 여성단체에 대한 소개 브로슈어나 단체활동 사례집 등 정기적인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배치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성단체에 대한 표면적인 홍보와 함께 여성단체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실질적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성단체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여성단체를 이해하고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수원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원시 여성단체별 소규모 모임 활성화

심층면접조사에서 인구의 감소가 여성단체 회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정보공유의 편리함이 과거 여성단체가 주도적 활동을 통해 취득했던 정보들을 온라인과 SNS가 대신하는 시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단체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여성단체별 시대변화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 신규 회원 모집방식의 변화, 기존 회원들과의 소통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수원시 여성단체가 현재 공통적으로 변화에 동참하는 것은 소규모 모임의 활성화로 과거 단체의 목표와 이념을 따르는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단체와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성인지 교육, 여성 및 여성단체의 인식제고, 성평등 관련 정책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본 여성단체 대표의 경우 소규모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이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및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지속적이고 유익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상호간의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체활동의 이해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때 수원시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성단체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수원시 여성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여성단체 소규모 모임 장소 제공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소규모 여성단체는 단체 운영 공간도 부족하여 모임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단체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무공간 지원을 통한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서울 여성플라자 내에 NGO 센터(펼침터, 돌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여성단체를 위한 NGO센터 건립 및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어 현재 여건상 제약이 많으므로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울시와 같은 NGO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되 단기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모임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간 지원에 따른 여성단체의 역할은 성평등·성인지 교육, 성평등·성인지 관련 정보 제공, 여성의 인권 증진 프로그램, 수원시 여성 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시민들과 다양하게 교육 및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병준(2011),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경훈·안영훈(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미옥(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Social Welfare Policy* 22(8), pp.351-381
- 김복태·박성정·장윤선·하현상(2018),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현황분석 및 활성화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석준·곽진영·문병기·이선우(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 김세훈(2015),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과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2015 9호, pp.19-30
- 김정환·정학규·이상원·신태순·서명선(1985),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 김준기(2006), 정부와 NGO, 박영사
- 김진경·황기원(201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주민역량강화 효과성 분석: 푸른 경기 2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2(5), pp.5-18
- 김혜경(1999), 지역여성운동의 성격연구 : 경기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3호, pp. 197-226
- 김희경·이경숙(2014),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마경희(2010), 성평등 전략으로서 성주류화의 딜레마와 위험들, 국가와 젠더, 한울
- 문순홍·정규호(2000), 거버넌스와 젠더: 젠더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탐구, *한국정치학회, Post-IMF Governance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pp.1-22
- 박길용(2017),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市)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과정 분석: 보봉(Vauban)생태주 거단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7권 1호, pp.31-57
- 박종미(2010), 정보화 수준이 청각장애(농)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명선(1985), 아내학대와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국희(2002),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11(2), pp.125-144

안태윤·황해동(2012), 경기도 여성단체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오혜란(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7권 2호,
pp.37-80

윤형섭·김영래·이완범(2006),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박영사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36권 4호, pp.321-338

_____(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권 2호, pp.23-53

이민호·윤광석·조세현·원소연(2014),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모색: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19권 1호, pp.121-146

이상락(20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지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영안(2017), 수원시 기금 사업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양성평등기금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이윤애(2003),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네트워킹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이혜숙(1999), 지역여성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7권
2호, pp.35-62

이화진(2018), 제주지역여성단체의 성평등 역량강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장연경(2014),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 사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지호·홍정화(2010),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권 3호, pp.103-133

전주희(2018),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
협동과정 공연예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정원식(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정현백·정진성·한정숙·김혜경(1998),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조형(1984), 한국 여성운동의 비판적 고찰, 이화 제42호

최성욱(200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분석, 정부학
연구 10권 1호, pp.239-261

태희원·조운진(2016), 충남 여성NGO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00~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한정자·이상원(2004),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허성우(1997), 대전지역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연구,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연구사업보고
서, 대전광역시

- _____(1998), 지역여성 현실과 한국여성운동의 새로운 국면: 지역여성의 현실과 과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허소영(2013),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효과 분석: 수원 못골시장 사회적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희·윤연숙(2007), 인천지역 여성단체의 현황과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인천발전연구원

〈영문 자료〉

- Ansell, Chris & Gash, Alison.(2007),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s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191-215
- Foy, N.(1994), *Empowering People of Work*, Gower Publishing Ltd., pp.3-5
- Gutierrez, L & DeLois & GlenMaye, L.(1995), Understand Empowerment Practice: Building on Practitioner-based Knowledge, *Families in society*, 76(9), pp.534-542
- Gutiérrez, L & Parsons & Cox, E. O.(1998),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A Sourcebook*. Pacific Grove
- Jessop, Bob.(2003), Governance and Metagovernance: on Reflexivity, Requisite Variety, and Requisite Irony. Preprint of a chapter in Henrik Bang, ed., *Governance as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101-116
- Kooiman, Jan.(2003), Modles of Governance, In J. Kooiman,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Press
- Milen, A.(2001), What do we know about capacity building? An overview of existing knowledge and good practic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 Newman, J.(2001), *Modernizing Governance: New Labor, Policy and Society*. London: Sage
- Parsons, R. J.(1991), Empowerment: Purpose and practice in social work, *Social Work with Groups*, 14(2), pp.27-43
- Peters, B. Guy.(2001), *The future of governing*,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Pierre, John. & Peters, B. Guy.(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pp.223-243
- _____(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 Provan, K. G. & Lemaire, R. H(2012). Core Concepts and key ideas for understanding

- public 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using research to inform scholarship and pract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5)
- Rappaport & Zimmerman(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ie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pp.725-750
- Rhodes, R. A. W.(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 pp.652-667
- Salamon, L. M.(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 Toward a Theory of Government 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6, pp.29-49. Reprinted in Salamon(1995)
- Shera, W. & Wells, L. M.(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Developing richer conceptual foundations
- Staples, L. H.(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Social Work* 17, pp.29-41
- Stoker, Gerry.(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pp17-28.
- Zimmerman, M. A.(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pp.581-599

〈신문 자료〉

새수원신문, [인터뷰]최수아 (새경기여성단체 수원시협의회 회장 “수원의 발전과 수원여성 복지 위해 앞장서 뛰겠다”, 2018년 5월 10일자 보도자료

〈사이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npas.mois.go.kr/>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 wsp.mogef.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부 록 |

1.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설문지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수원시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수원시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에 대해서 재탐색하고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수원시 여성단체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5월

수원시정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관 : 수원시정연구원

○ 문 의 처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이명안 연구위원 031-220-8025

이근혁 위촉연구원 031-220-8026

A8.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활동하는 방식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응답 가능)

- ① 주창활동: 의견주장, 권력 감시, 정책제안 등
- ② 서비스생산 법률지원, 상담, 자문, 교류, 교육, 봉사, 간호, 원조 등
- ③ 대안사회운동: 공동체생활, 생협, 착한소비,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A9. 귀하가 속한 단체는 활동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주창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서비스생산	①	②	③	④	⑤
3) 대안사회운동	①	②	③	④	⑤

A10. 귀 단체의 주요한 활동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요 활동대상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응답 가능)

- ①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범죄 피해자
- ② 일하는 여성, 마을(지역)여성, 경력단절 여성
- ③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④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 ⑤ 유아, 청소년
- ⑥ ()

A11. 귀하가 속한 단체는 주요 활동대상에 따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한 편이다	매우 활발하다
1)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범죄 피해자	①	②	③	④	⑤
2) 일하는 여성, 마을(지역)여성, 경력단절 여성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⑤
4)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①	②	③	④	⑤
5) 유아,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①	②	③	④	⑤

A12. 귀 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기여한다
1) 여성의 정치세력화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성주류화 실현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의 인권 신장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	①	②	③	④	⑤
7) 젠더이슈의 의제화 촉진	①	②	③	④	⑤
8) 지자체-여성단체 및 NGO 거버넌스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9) 양성평등 의식 확산	①	②	③	④	⑤
10) 양성평등 시민문화 조성	①	②	③	④	⑤

A13. 다음은 귀하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해 온 조직의 역사에 강한 자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목표와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경력개발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구성원들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II	재정 현황 및 역량
----	-------------------

B1. 귀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2018년 기준, 프로젝트 사업비 포함)
(_____만원)

B2. 귀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비율을 작성해주세요

내부수입		외부수입				계
회비	자체사업 수익 (임대료, 나눔장터 등)	후원금 (후원행사 등)	정부(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	민간단체 (기업, 공익단체 등) 지원금 및 협찬	기타	
%	%	%	%	%	%	100%

B3. 귀 단체의 예산 지출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비율을 작성해주세요.

※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부가세, 관리비, 식비, 광고비,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사무용품비용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계
%	%	%	%	100%

B4. 귀 단체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시해 주십시오.

※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등과 같은 양성평등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공익활동지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구분	(모두 응답) 2019년 지원사업 신청 여부		(2019년 신청한 경우) 2019년 지원사업 선정 여부		(모두 응답)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지원사업 선정 여부	
	신청하지 않음	신청함	선정되지 않음	선정됨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1) 중앙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2)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3) 광역시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4) 광역시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5)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6) 시군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B5. 귀 단체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참여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이념,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단체인 협력(연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산생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단기사업과 연속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사업선정 대상 수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정산의 유연성 확보 및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양성평등기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사업선정 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예산사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예산액의 최대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6. 다음은 귀 단체의 재정적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표와 이사는 단체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행정인력 중 재무원, 회계 관련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원 중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7.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재정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인건비 충당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회원확대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후원모금 제도와 활동기반의 한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사업관련 행정절차의 복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 항목 미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단체 사무국 공간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재정확보의 어려움(회비에 국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홍보예산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양성평등기금 등 정부공모사업의 접근성 제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8.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재정 안정화(재정난 해결)를 위해서는 다음 지원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여성단체/NGO 재정컨설팅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공공기금의 조성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중앙/지방정부 지원(공간, 활동기 경비, 인건비 등)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부문화(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프로젝트 참여기회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회원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부사업 참여시 단체의 재정 재량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자부담의 부담 없이 사업을 구성·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프로젝트 예산편성 시 인건비 비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인적자원 현황 및 역량
------------	---------------------

C1.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는 몇 명입니까?
(명)

C1-1. 귀 단체에 상근활동가가 있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3년 이상~5년	3년 미만	합계
여성 상근활동가	명	명	명	명	명
남성 상근활동가	명	명	명	명	명

C1-2.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 연령별 분포를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합계
여성 상근활동가	%	%	%	100%
남성 상근활동가	%	%	%	100%

C1-3. 귀 단체의 상근활동가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4대 보험 가입여부			급여수준 (만원 단위)	근로시간 (1일 기준)
① 미가입	② 일부가입	일부미가입	③ 가입	()만원
				1일 ()시간

C2. 귀 단체의 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회원수	남성회원 비율	회비납부 회원 비율	총회 참석비율
%	%	%	%

C3. 귀 단체 회비 납부 회원의 연령별 분포를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합계
회비납부 회원	%	%	%	100%

C4. 귀 단체의 경우,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하고 있다면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분	교육훈련 제공여부		제공한다면, 제공하는 방법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시해 주십시오)			
	제공 하지 않음	제공함	단체 내		단체 밖	
			단체내의 자체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종사자 역량을 개발	경력이 오래된 선임이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	단체 밖에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역량을 개발	직장단체밖에서 외부 전문가(멘토)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개발
1)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①	②	①	②	③	④
2)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①	②	①	②	③	④
3)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①	②	①	②	③	④
4) 회원활동 역량강화	①	②	①	②	③	④

C5. 귀 단체의 경우,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①	②	③	④	⑤
2)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4) 회원활동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C6. 귀 단체는 다음 각 주체들의 역량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 여성단체(여성NGO) 리더역량 개발	①	②	③	④	⑤
2) 여성단체(여성NGO) 상근활동가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4) 회원활동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C7. 다음은 귀 단체의 인적자원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상근활동가 인적구성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회원구성원 규모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상근활동가 모집은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차세대(중간리더) 발굴 및 육성은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상근활동가들은 여성주의 마인드를 적절히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상근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잘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8.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활동가들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활동가들의 전문성 대비 낮은 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여성운동의 이슈파악을 위한 교육 미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인력충원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활동가들의 중도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 여성단체/소모임 네트워크 기회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인적자원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정부/지자체/기타)의 지원미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인적자원관리 전담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년여성들의 참여저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9.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활동가들의 복리후생, 복지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공공 및 민간분야 퇴직인력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활동가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신규 활동가 발굴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신규 활동가 및 기존 활동자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단체 유형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인적 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가의 의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여성활동가에 대한 인식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활동가 대상 대학원, 전문교육 등 계속교육 기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정부, 정당과 연대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정책참여 현황 및 역량
-----------	---------------------

D1. 귀 단체는 아래 제시된 정책과정의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중요	매우 중요
1) 정책 의제 설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형성/ 결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3) 정책 집행 단계	①	②	③	④	⑤
4) 정책 평가 단계	①	②	③	④	⑤

D2. 귀 단체는 지난 1년간 아래에 해당되는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귀 단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정책과정의 참여는 개인적인 활동 차원이 아니라 단체를 대표해서 참여한 경우임
- 정책의제설정: 정부가 문제점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정책문제로 선정하는 단계
 - 정책형성/결정 단계: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
 - 정책집행 단계: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
 - 정책평가 단계: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성공 또는 실패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단계

구분	참여여부	(참여자) 역할 수행 정도(참여 정도)								
		참여 하지 않음	참여함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정책 의제 설정 단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발 ·시위, 서명,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여성정보제공 ·제기된 여성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화 역할 ·제기된 여성문제의 정책의제화를 위한 정부에 압력 행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형성/ 결정 단계	·제안된 정책이 여성문제 해결에 부합하는지를 비교·분석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과 아이디어 개발 ·정책결정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 집행 단계	·정부의 서비스를 여성단체가 대신하여 주민들에게 제공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행(직접수행) ·정책집행과정 모니터링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책 평가 단계	·집행된 정책의 오류 수정 및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정책지문 및 평가 ·정책수정을 위한 여론형성 및 시민대상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3. 귀 단체는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귀 단체가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유형별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참여여부		(참여시) 역할 수행 정도(참여 정도)						
	참여 하지 않음	참여함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각종 위원회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모니터링단, 서포터즈단, 정책평가단 등 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정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성 주류화 추진 및 주민참여제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위탁사업 추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4. 귀 단체는 다음 정책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다소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정책 의제 설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2) 정책 형성/ 결정 단계	①	②	③	④	⑤
3) 정책 집행 단계	①	②	③	④	⑤
4) 정책 평가 단계	①	②	③	④	⑤

D5. 다음은 귀 단체의 정책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책과정 참여지침이나 매뉴얼이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책사업에 많이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위원회 등 정책참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책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단체가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책과정참여의 양적/질적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6. 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책참여 및 역량 관련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의제 발굴 역량 미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정책과정의 제한적 참여기회(정책의제설정과정에 국한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수동적/형식적 정책과정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정부부처의 여성단체와 협력관계 인식 부족(여성단체는 동원대상, 자원봉사활동 대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부부처의 양성평등관련 역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정책참여관련 법/제도 미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NGO간 정책역량 격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관심분야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행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로 신뢰관계 구축 미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7.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지속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전담 및 양성평등관련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성단체 및 여성NGO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담 및 양성평등관련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 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담관련 단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정책과정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년여성의 여성이슈관련 정책과정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과정 참여 할당제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과정 참여의 투명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책참여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단체 및 여성NGO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시민과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환류 시스템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여성정책의제 발굴 및 정기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일반시민과 여성단체의 공동 이슈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시민단체들이 공유하는 여성정책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공무원의 여성단체 및 여성NGO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거버넌스 현황 및 역량
---	---------------------

E1. 귀 단체는 다음 분야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1) 시민사회 분야	①	②	③	④	⑤
2) 공공분야	①	②	③	④	⑤
3) 민간분야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및 연구기관	①	②	③	④	⑤

E2. 현재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 협력형성(연대활동) 및 유지 정도, 협력유형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네트워크 형성 여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면 네트워크 유지 여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면 협력유형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중복응답 가능)			
	네트워크 형성하지 않음	네트워크 형성함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않음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음	정보 및 의견 교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공동사업 추진, 공식적 계약 등	
시민 사회	1) 지역풀뿌리단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2)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	①	②	①	②	①	②	③
	3) 다른 이슈의 NGO(시민단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공공 분야	4) 정부(중앙/지방)	①	②	①	②	①	②	③
	5) 의회(국회/지방의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6)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민간 분야	7) 기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8) 금융	①	②	①	②	①	②	③
	9) 언론	①	②	①	②	①	②	③
학교/ 연구 기관	10) 대학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1) 여성정책 연구기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2) 일반 연구기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3) 초·중·고	①	②	①	②	①	②	③

E3. 귀 단체는 다음 분야와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음	충분하지 않음	보통	다소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시민사회 분야	①	②	③	④	⑤
2) 공공분야	①	②	③	④	⑤
3) 민간분야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및 연구기관	①	②	③	④	⑤

E4. 다음은 귀 단체의 거버넌스(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 및 기업 등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단체활동에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민을 잘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 주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사회 주인의 교육·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단체의 역량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풀뿌리아성조직과의 연대를 잘 형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5. 귀 단체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행정기관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속적 거버넌스를 위한 체계구축 미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활동가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특정 여성단체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공무원들의 협치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신뢰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형식적 거버넌스(구색맞추기)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거버넌스 역량/ 특성 차이가 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개인의 기회주의적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6. 귀 단체는 여성단체 혹은 여성NGO의 거버넌스(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지원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지자체의 네트워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양한 행위자간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물뿌리조직 등)관계 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양한 행위자들의(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물뿌리조직 등) 참여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효과성 및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 NGO간 공동협력 사업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양한 참여자간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절차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물뿌리여성조직 발굴 및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단체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여성NGO가 참여하는 지역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장단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공동사업 지원제도 및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지속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의 거버넌스 참여비율 할당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	응답자 특성
----	---------------

소속 기관명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만 ()세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학사) ④ 대학원 졸업(석사) ⑤ 대학원 졸업(박사)		
현재 소속 기관 내 직책	① 상근활동가 ② 대표		
현 기관 근무 기간	()년 ()개월	업무관련 총 경력 기간	()년 ()개월

Abstract



A Study for Capacity Strengthening and Vitaliz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in Suwon City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maintaining and expanding the effectiv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uwon's women's organization and the City. First of all, it examined the overall status of the women's organizations such as recruitment or membership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Then it identified the difficulties and shortcomings in the oper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to maximize their capacities as important partners in women's policy-making. As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 the survey on women's organizations' competency statu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Based on these, the ways to strengthen the capacity and revitalize women's organizations in Suwon are presented as follow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women's organizations in Suw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foster next-generation activists for each organization.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purpose of fostering activists who understand the major generations of the group including the current and new members for organization. Then it would bring about harmony between existing and new members. Second, standards for gender equality funding projects need to be expanded. The budget for women's organizations in Suwon is raised through the Gender Equality F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riteria for supporting gender equality funds to capacity strengthening of organizations. Third, the committees in Suwon should be organized through various forms. When official channels for women's organizations and citizens to participate in City's public policy process are appointed to the committee, they can have the authority to express and make decisions in Suwon municipal administration.

For vitalization of women's organizations in Suwo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between City and women's organizations. As a practical way, Suwon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a formal, continuous and equitable communication system for cooperative governance. Seco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promoted to secure the self-support of women's organizations. Even though women's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public relations plan, it will be a great help to secure the self-sustainability of women's organizations if the promotion effect can be enhanced through the support of Suwon.

Lastly, small-group meetings of women's organizations need to be activated. When City provides a small meeting place for women's groups that utilizes idle spaces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more to the vatalization of women's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the women's organizations with support of meeting places is to provide various contents for education and communication with citizens.

Keyword : Women's organizations, Collaborative Governance, Capacity Strengthening, Activation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이근혁

행정학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nafuza@suwon.re.kr

